

2022.05

수시연구 2022-01

조합원 자격 제도개선 연구

- 어선의 지분구조를 중심으로 -

이창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2. 05
수시연구 2022-01

조합원 자격 제도개선 연구

-어선의 지분구조를 중심으로-

이 창 수 (책임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이창수

요 약

□ 연구 배경

- 농업부문에서는 지분 소유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을 선거, 조합사업 이용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 산림조합은 ‘지분쪼개기’로 조합의 선거에 개입, 악용하는 사례 발생을 계기로 「산림조합법」을 개정하여, 조합원 자격 기준을 강화함
 - 농협,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의 최소 경영 규모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의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수산부문에서도 어선의 지분 소유가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 '21년 국정감사 윤재갑 의원 지적
- 이에 어선의 지분 소유로 인한 문제, 악용사례의 확인을 통해 ‘지분쪼개기’ 발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어선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임
 - 어선의 ‘지분쪼개기’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중점 사항 : 3가지로 구성

- 우리나라의 어선 지분 구조 파악
- 기존 사례 검토
- 정책수요자의 태도 확인

□ 주요 연구 추진 방법

- 지구별수협 조합원 현황 및 관련 법·정관 분석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등 관련 법률 및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분석
 - 선거규정 : 수산업협동조합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 대의원선거규정, 조합원투표에 관한 규약 등 분석
- 어선의 지분구조 현황 파악
 - 어선에 대한 지분권 소유 실태 분석
 - 어선의 지분 소유구조 분석
- 조합원 자격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조사
 - 회원조합 대상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 실시
 - 어업인 대상 「어선의 지분 소유 및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조합원 자격 제도 및 선거 규정 운용 실태, 어선어업 지분구조에 대한 인식,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 수협의 조합원 및 선거관리의 시사점

- 어업인 및 조합원의 자격에서 경영 규모 제한이 없음
- 어업인과 조합원의 자격이 일치하지 않음
- 비정기적인 조합원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명확한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

□ 어선의 지분구조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어선의 지분소유자는 소수에 불가
 - 어선 1척 당 소유권자의 수는 1.07명이었음

- 게다가 조합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획물운반어선 고려 시 어선 1척 당 소유권자 수는 1.06명으로 더 줄어듦
 - 1척 당 지분소유자의 수도 5인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 실제 1척 당 지분소유자 수 2~3명이 전체의 90% 이상 차지
 - 지분어선의 상대적 동해안 지역 집중 분포되어 있음
 - 경북에서 지분어선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 강원 순이었음
 - 지분어선과 관련한 민원의 발생 미미
 - 어선의 지분구조 분석을 통해 어선의 지분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음
- 어선의 지분 소유로 인한 선거 부작용 등에 따른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은 숙고 필요

☐ 어선 지분율 특징

- 어선의 지분율 3대 형태로 구분
 - 지분소유자가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일부 지분 소유자의 비율이 여타 소유자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 1명의 지분 소유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율을 소유
- 마을어장 관리, 어획물 운반업 등 공동의 사업 목적에 따른 어선의 공동소유 형태가 눈에 띄음
 - 어촌계와 같은 공동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을 가지는 형태가 많음

☐ 회원조합과 어업인 간 지분소유자에 대한 인식에서의 시사점

- 회원조합과 어업인 모두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음

- 실제 주변에서 어선 지분 소유자가 많지 않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 간 어선 지분소유자에 대한 인식 차이는 확인할 수 있음
 -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원 확보’를 통해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분어선·지분권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 어업인들은 어업인 상호 간 ‘형평성’, ‘공정’ 등에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으며, 지분어선·지분권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함

정책제언

- 수협지도사업 개선
 - 조합원의 어업활동 증명 의무화 등으로 조합원 관리의 실효성 강화
 - 각종 선거 시 선거인명부 작성의 투명화로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무자격 조합원 정리로 행정 효율 및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
 -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 대상 감사 기능 강화
-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어선의 소유구조 조사, 분석, 조합장 선거 시기 고려 4년 주기 실시
- 조합원의 최소 경영 규모 설정 검토 필요
 - 최소 경영 규모 설정의 필요성 : 간 갈등 요인 제거,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 배제, 제도적 완비성 등
 - 고려사항 : ①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② 어업인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 ③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함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9
	1. 연구 방법	9
	2. 연구의 구성	1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2
	1. 조합원 가입제도 관련 연구 배경	12
	2. 조합원 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3
	3. 개선 방안	14
제2장	수협의 조합원 및 선거 관리 현황	17
	제1절 조합원 관리 현황	19
	1. 수협의 조합원 현황	19
	2.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제도	23
	3. 농림어업인 및 조합원 자격	25
	4. 조합원의 책임과 권리	28
	5. 조합원 관리 실태	30
	제2절 선거 관리 현황	34
	1. 의결권 및 선거권	34
	2. 선거관리 규정의 운영	37

제3절 시사점	39
1. 경영 규모에 따른 어업인 자격 미제한	39
2. 어업인과 조합원의 자격 미일치	40
3. 부정기적 조합원 관리	41
4. 선거관리 규정 준수	42

제3장

어선의 지분구조 분석	43
제1절 지분의 개념	45
1. 소유의 형태	45
2. 수산부문에서의 어선 공동 소유	46
제2절 어선 현황 및 지분구조 분석	48
1. 등록 어선 현황	48
2. 어선 지분구조 분석	53
제3절 어선 지분 소유자 활동 현황	76
1.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 활동 및 수협사업 이용	76
2. 지분 소유 사례	79
제4절 시사점	94
1. 지분 어선의 분포	94
2. 어선 지분구조	98

제4장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99
제1절 조사 개요	101
1. 조사 목적	101
2. 조사 설계	101
3. 조사 항목	103

제2절 조사 결과	105
1. 회원조합의 조합원 관리 실태	105
2. 어업인의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114
제3절 시사점	123

제5장	결 론	125
	제1절 연구 결과	127
	1. 연구 중점 사항	127
	2. 시사점 종합	128
	제2절 정책 제언	132
	1. 수협인 지도사업 개선	132
	2. 지자체의 역할 강화	135
	3. 조합원의 최소 경영 규모 설정 검토 필요	136
참고문헌		140
부록1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부문 연구 동향	145
부록2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 조사표	148
부록3	「어선의 지분 소유 및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158

표 차례

〈표 1-1〉 연구내용별 주요 연구 방법	9
〈표 2-1〉 회원조합의 조합원 현황	19
〈표 2-2〉 수협 및 조합원 현황	20
〈표 2-3〉 지역별 지구별수협 및 조합원 현황	21
〈표 2-4〉 조합원 수에 따른 조합 분포	22
〈표 2-5〉 조합원 1천 명 이하 회원조합의 지역별 현황	23
〈표 2-6〉 조합원 자격 관련 규정	24
〈표 2-7〉 조합원의 요건	25
〈표 2-8〉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 기준	27
〈표 2-9〉 조합원의 책임 관련 규정	29
〈표 2-10〉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30
〈표 2-11〉 신규 조합원에 대한 조합사업 이용 제한 여부	32
〈표 2-12〉 조합원 관리와 관련한 현안 과제	34
〈표 2-13〉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의 정의	39
〈표 2-14〉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별 자격 규모	40
〈표 3-1〉 소유형태에 따른 주요 내용	46
〈표 3-2〉 연도별 어선 수 변화 동향	48
〈표 3-3〉 시도별 어선 수 현황	49
〈표 3-4〉 연안업종별 어선수 현황	50
〈표 3-5〉 10톤 이하 어선의 시도별 분포 현황	52
〈표 3-6〉 연안업종의 톤수별 어선 분포 현황	53
〈표 3-7〉 분석 자료 현황	55

〈표 3-8〉 지역별·تون급별 분석 대상 어선 분포 현황	58
〈표 3-9〉 지역별·تون급별 지분어선 분포 현황	62
〈표 3-10〉 지역별·تون급별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64
〈표 3-11〉 지역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관련 주요 업종 현황	65
〈표 3-12〉 인천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66
〈표 3-13〉 경기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67
〈표 3-14〉 강원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68
〈표 3-15〉 충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69
〈표 3-16〉 전북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70
〈표 3-17〉 전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71
〈표 3-18〉 경북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72
〈표 3-19〉 경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73
〈표 3-20〉 부산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74
〈표 3-21〉 제주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75
〈표 3-22〉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10명 미만)	80
〈표 3-23〉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10명 이상)	80
〈표 3-24〉 지분권자의 톤급·인원수별 빈도 분포	81
〈표 3-25〉 인천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2
〈표 3-26〉 경기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3
〈표 3-27〉 강원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3
〈표 3-28〉 충남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4
〈표 3-29〉 전북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4
〈표 3-30〉 전남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5
〈표 3-31〉 경북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6

〈표 3-32〉 경남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6
〈표 3-33〉 부산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7
〈표 3-34〉 제주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88
〈표 3-35〉 일명 ‘산 쪼개기’ 사례	93
〈표 3-36〉 지역별 어획물운반선 현황	95

〈표 4-1〉 조사 설계	102
〈표 4-2〉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세부 조사 내용	104
〈표 4-3〉 응답 조합의 지역별 분포	105
〈표 4-4〉 응답 조합의 조합원 수별 분포	106
〈표 4-5〉 응답 조합의 위판실적	106
〈표 4-6〉 응답 조합의 위판 실적별 분포	106
〈표 4-7〉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109
〈표 4-8〉 1척 또는 톤수별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인식	111
〈표 4-9〉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114
〈표 4-10〉 응답자의 종사어업별 분포	115
〈표 4-11〉 지역별 응답자의 경력 분포	115
〈표 4-12〉 응답자의 직책 분포	116
〈표 4-13〉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증명 필요성	118

〈부록 표 1〉 수협 관련 연구 초창기(1970년대)의 연구목록	145
〈부록 표 2〉 1980~90년대 수협 관련 연구목록	146
〈부록 표 3〉 2000~2010년대 수협 관련 연구 목록	14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목적	6
[그림 1-2] 연구 진행 절차	7
[그림 2-1] 회원조합의 부문별 조합원 관리	31
[그림 2-2] 신규조합원 선거권 제한	33
[그림 3-1] 어업별 어선수 현황	50
[그림 3-2] 어선 톤수별 분포 현황	51
[그림 3-3] 지역별 분석 대상 어선 분포 현황	56
[그림 3-4] 톤급별 분석 대상 어선 분포 현황	57
[그림 3-5] 지역별 지분어선 및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59
[그림 3-6] 톤급별 지분어선 분포 현황	60
[그림 3-7] 톤급별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63
[그림 3-8]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어업활동에 대한 평가	76
[그림 3-9]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정도	77
[그림 3-10]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 유무 및 관련 민원 발생	78
[그림 3-11] 조합가입 및 선거권 관련 민원 발생 정도	79
[그림 4-1] 조합원의 조합사업별 이용 현황	107
[그림 4-2]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에 대한 ‘어업인’ 인정	108
[그림 4-3]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대한 인식 및 어업활동 증명의 필요성	109
[그림 4-4]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자격 제한 방향	110

[그림 4-5]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 선거권 제한에 대한 인식	111
[그림 4-6]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 조합사업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112
[그림 4-7] 규정 개정에 대한 인식 및 효과 기대 정도	113
[그림 4-8] 규정 적용 방식에 대한 인식	113
[그림 4-9] 응답자의 조합사업별 이용도	117
[그림 4-10] 어선 지분 소유자 인지 및 조합가입에 대한 인식	117
[그림 4-11]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인 자격에 대한 인식	118
[그림 4-12]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한 및 제한 방향에 대한 인식 ..	119
[그림 4-13] 어선 지분 소유자의 선거권 및 조합사업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120
[그림 4-14] 조합 사업별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120
[그림 4-15] 어업인들의 규정 개정에 대한 인식 및 효과 기대 정도	121
[그림 4-16] 규정 적용 방식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122

제 1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구별수협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조합원은 조합 존립의 필수 요소임과 동시에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이 행하는 각종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윤은 이용 실적(이용고)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조합원은 조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사업의 이용자이며, 조합의 주인이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는데, 대표적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조합의 임원 등 선출직 직원이 되거나 선출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에 깊게 관여한다. 특히 지구별수협은 협동조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선거 및 의결권이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투자액의 크기에 따라 의결권의 양이 결정되는 주식회사 등 일반적 회사법인과는 달리 지구별수협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합원의 역할은 업종별수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연안어업의 경영에서 어선의 지분을 분할(分割)하여 소유하는 행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어선을 구매하는 경우 신조(新造) 또는 중고 선박을 거래하게 되는데,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가 있으므로 구매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비용 역시 크다. 이에 자금을 조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복수의 어업인이 어선을 공동구매 한 후 그 소유권을 나누어 지분의 형태로 보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선구매는 어업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가족 간 경영 이양을 위해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선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어선을 지분을 통해 소유한 경우에도 어업경영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구별수협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어선의 지분 소유가 지나치게 이루어질 경우 몇몇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어선에 지나치게 많은 지분이 분할된 경우이다. P수협의 경우 1.38톤인 어선에 8명의 어업인이 지분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어선의 규모는 영세한데 반해 다수의 지분권자가 등록됨에 따라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게다가 8명의 지분권자는 모두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해당 수협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이 권리에는 P수협의 각종 사업의 이용권은 물론 조합 운영에 필요한 선거권·피선거권도 포함되므로, 조합원 가입 시 자격요건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P수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소재 수협에서 조합원 가입·탈퇴와 관련하여 조합의 선거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 한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숫자가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는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 전 조합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조합원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

실제 조합 가입제도의 경우 정당성, 형평성 등의 보편적 기준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선의 지분 소유를 통해 조합원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선거와 관련한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선의 지분을 소유한 것만

1) 2021년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어선의 지분 소유, 일명 ‘지분쪼개기’에 대해 지적했다.

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의 권리인 조합사업 이용과 선거·표결 등에서 일반조합원과 어선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들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정상적인 어업활동 또는 어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선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정 수준 제한될 필요가 있음은 조합 가입의 정당성, 조합원 간 형평성,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어선의 지분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어선의 지분 소유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함이 확인 될 경우 관련 제도를 보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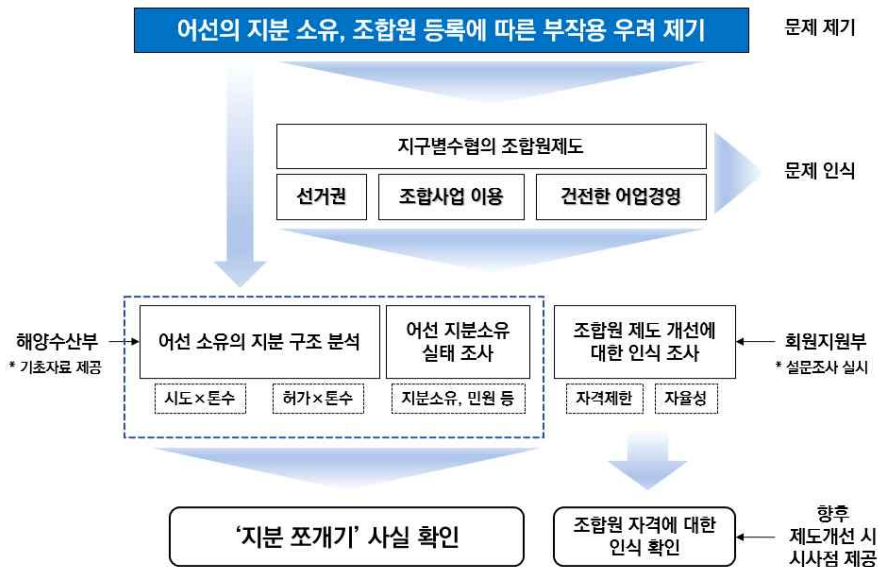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어선은 어업에서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연근해어업에서 어선은 어업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소로 간주 된다. 하지만 어선의 구매 비용 조달의 부담으로 복수의 어업인이 어선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업의 지속적 영위를 위해 가족 간 어선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도 한다. 어촌계 등에서는 어장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선박을 어촌계원들이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어선으로 등록한다. 즉, 어선의 소유권을 지분율을 정해 분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이때, 지분을 통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

게 된다. 조합원이 될 경우 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거권, 조합이 행하는 사업의 이용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어선의 지분권을 가진 어업자가 해당 어선을 통해 어업경영을 영위하는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명의 상의 어업활동이 아닌 건전한 어업경영이 영위되어야 조합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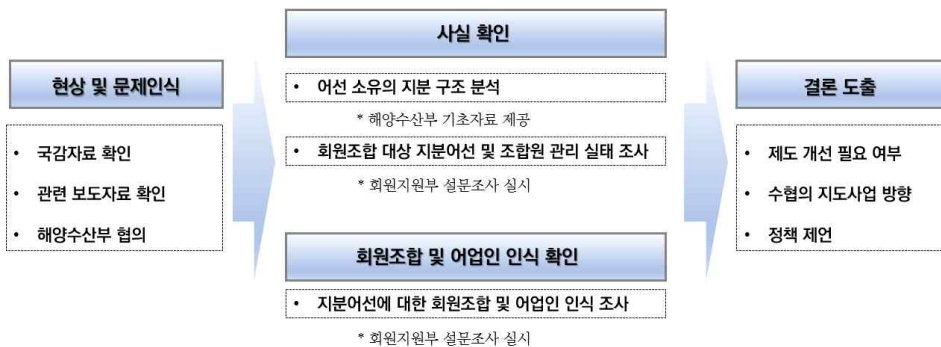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선의 지분 소유 및 조합원 등록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에 주된 목적을 둔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선등록통계와 회원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어선등록통계를 바탕으로 소유 지분 구조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어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선의 지분 소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와 함께 조합원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 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세부적으로는 어선 소유의 지분 구조를 분석하고, 조합원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한다. 어선 소유의 지분구조는 특히 시도별·어선톤수별, 허가종류별·어선톤수별 분석을 통해 지역과 어업의 형태별 지분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합원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는 어업인과 지구별수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지분구조, 자격 제한, 제도 적용의 자율성 등으로 구분하고, 각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연구는 [그림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현상 및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어선의 지분을 통해 소유한 자들의 조합 가입, 관련 문제들을 인지한다. 국정감사 자료, 각종 보도자료 등을 확인하게 되며, 해양수산부와 의 정보 공유 등 연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그림 1-2] 연구 진행 절차

다음은 사실 확인과 회원조합 및 어업인 인식 확인 단계이다. 실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먼저 사실확인을 위해 어선 소유 지분 구조 분석, 회원조합의 지분 어선 현황 및 신규 조합원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어선 소유 지분 구조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각 시도의 어선등록자료를 제공 받아 분석한다. 그리고 회원조합의 지분 어선 현황 및 신규 조합원 관리 실태는 수협중앙회의 회원지원부를 통해 조사한다. 사실 확인과 함께 진행

하는 회원조합 및 어업인 인식 확인은 지분어선에 대한 회원조합 및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이 설문조사 역시 수협중앙회의 회원지원부를 통해 실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앞선 단계의 사실 확인을 통해 조합원 자격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판단한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해 정책적인 방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수협의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지도사업의 방향을 어선 지분구조 분석 결과 및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인식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간단히 제언할 것이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어선의 지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취득으로 인한 부작용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의 하나로, 다양한 연구 방법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문헌 연구,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표 1-1〉 연구내용별 주요 연구 방법

구분	법제도 분석	어선 지분구조 파악	조합원 제도 운영 사례	제도 개선 인식
연구 방법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조사	설문조사
주요 내용	• 관련법 분석 • 조합원제도의 특성 파악 • 제도개선 근거 마련	• 어선 소유 지분 자료 수집 및 분석 • 지역, 업종 등으로 구분	• 지역별 조합원제도 운영 특성 • 어선 지분 소유의 부작용 파악	• 어선 지분구조에 대한 인식 • 조합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식 • 제도 적용 상 자율성 부여 및 제도 수용성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정관의 분석, 선행연구 등의 문헌연구는 본 연구에 적용된 주된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입수와 분석이 이루어진다. 연안어선에 대한 지분구조와 관련한 자료 조사와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원 제도의 운영과 어선 지분 소유로 인한 조합원 자격 취득의 부작용은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지구별수협의 여건이 다름에 따라 조합원 제도의 운영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원인 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편 조합원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어업인과 지구별수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제도 변화의 필요성, 제도 수용성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구성을 정리했다. 본 연구가 수행된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고,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용한 방법,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연구의 본론에 해당하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는 연구의 주 내용을 장별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제2장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및 선거관리와 관련한 사항이다. 크게 조합원 관리와 선거관리로 구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제도적인 부문으로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을 자세히 분석하게 된다. 제3장은 연안어업의 지분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로 구성된다. 연안어선의 현황 및 지분구조에 대한 기초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연안어선의 지분 소유와 관련하여 지분권자의 어업 활동 및 수협사업의 이용 사례, 지분 소유의 오용 사례도 파악하여 기술한다. 제4장에는 조합원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수록한다.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조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연안어선의 지분구조에 대한 인식, 둘째,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자격 제한 강화에 대한 인식, 셋째, 조합원 제도 적용의 자율성 부여에 대한 인식이다.

마지막인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조합원 자격제도의 개선 필요에 대해 결론 짓는다. 그리고 향후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수협의 지도사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도 간단히 정리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수협 조합원 가입제도를 주제로 실시한 연구는 수협중앙회에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진행했다.²⁾ 2018년의 연구는 조합원 가입 확대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2021년에는 명예조합원 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절에서는 이 두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수협 조합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주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³⁾

1. 조합원 가입제도 관련 연구 배경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조합 출자를 통해 자본금 형성, 조합사업의 이용 주체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존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합원 수 역시 정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10년대 들면서 어촌의 고령화가 이슈로 떠올랐고, 조합원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로 인해 조합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에 수협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었으며, 2018년에 조합원 가입 확대를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 박진규(2018), 임종선(2021)의 연구이다.

3) 협동조합의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이선신(2012, 2020)의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선어업구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최정운(1990), 강석규·정형찬(1997), 정광중·강만익(2003) 등을 참고했다. 다만 본 연구가 조합원 가입제도를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문에서 언급한 두 연구의 내용만을 정리했다.

이후 2021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기존 어업인 및 조합원 감소라는 배경 하에 고령조합원의 문제를 부각했다. 고령인 조합원의 어업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주요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수협이 준립 근거이기도 한 조합원을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고령의 조합원이 그간 수협의 발전에 대한 기여에 대한 평가와 수협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고령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기보다 또 다른 형태의 조합원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8년의 연구가 수협 조합원의 가입 확대를 위한 일반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졌다면 2021년의 연구는 고령조합원의 정비 문제를 특정하고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어선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조합원에 의해 조합의 선거 및 운영 등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를 확인함이 주된 연구내용 중 하나이다. 이는 기존 2018년과 2021년의 연구와는 주제와 배경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가 조합원 수 감소, 조합의 존속 등을 배경으로 한다면 본 연구는 조합원의 자격 제한, 조합의 합리적 운영, 제도개선 등을 배경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조합원 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기존의 두 연구에서는 조합원 가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2018년의 연구에서는 특히 조합원 고령화로 인한 조합의 운영상 문제점을 기술했다. 문제점은 첫째, 고령 조합원 당연 탈퇴 증가로 조합 설립인가 기

준 미달, 해산 및 합병, 둘째, 정예 조합원과 고령 조합원 간 이해 상충, 이의 조율을 위한 행정손실, 셋째, 고령 조합원 등 비활동 조합원 중심이 될 경우, 협동조합 정체성 저하이다. 넷째, 조합원 급감 시, 출자금 이탈 및 자기자본 확충 부실, 투자동력 약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 이탈로 인한 조합 경영 악화. 조합 경영 악화가 다시 조합원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의 연구는 조합의 가입과 관련한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조합 가입과 관련한 문제도 이전 연구에 비해 간단하게 지적했다. 첫째, 조합원 감소로 인한 수협의 존립 기반 약화, 둘째, 어업인의 혼란을 유도하는 조합원 자격제도, 셋째, 조합원 자격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증가, 마지막으로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협 강화 제도 부재 등이다.

전자의 연구가 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점을 도출했다면 후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밀도 있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근간을 형성함에 따라 수협의 존립기반 약화라는 문제는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3. 개선 방안

기존 연구에서 개선 방안으로 주장한 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조합원 가입 확대 방향에 대해 일반적 개선 방안을 도출했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1년의 연구는 조합원 자격제도,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다음은 각 연구

에서 도출한 개선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각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어선의 “지분쪼개기”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실태분석을 통해 ‘지분쪼개기’의 부작용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방지하는 개선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므로 기존 연구와는 접근 방법과 방안의 도출에서 차이가 있다.

1) 조합원 가입 확대 방향(2018년)

조합원 가입 확대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귀어인 지원 강화를 통한 조합원 확보, 둘째,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를 통한 조합원 확보, 셋째, 어업의 범위 확장 및 수산인 개념 도입을 통한 조합원 확보이다.

이들 방안은 현실적으로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귀어인, 여성어업인 등에 지원하는 것과 조합원 대상을 기존 어업인에서 수산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방안의 경우 구체적인 조합원 가입 유인 방안이 언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귀어인의 지원, 여성어업인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조합 가입 대상의 확장에 있어서도 수산인으로서의 개념 확대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가지는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등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2)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2021년)

2021년의 연구에서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으로 총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둘째, 명예조합원 도입, 셋째, 수협이 무자

격조합원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다. 연구의 배경이 고령조합원 문제의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조합원 자격제도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사업에 대한 제언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 제도에 대해 깊은 고찰과 함께 제도 도입 방안이 언급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방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협 조합원의 기본적인 자격인 어업인의 범위 확인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명예조합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명예조합원을 준조합원의 일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결정, 그리고 세부적인 연령, 조합원 가입 기간 등의 요건은 각 조합이 각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총회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조합원 자격 정비를 위한 특정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정비 대상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제 2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수협조합원 및 선거 관리 현황

제 1 절 조합원 관리 현황

제 2 절 선거 관리 현황

제 3 절 시사점



제 1 절 조합원 관리 현황

본 절에서는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등 회원조합의 일반현황과 함께 조합원을 관리하는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조합원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유추한다.

1. 수협의 조합원 현황

1) 일반현황

수협의 조합원은 <표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15만 3,678명이다. 이중 법인 회원은 530명으로 전체의 0.3%이며, 나머지는 모두 자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편이다. 남성 조합원은 10만 48명으로 전체의 65.1%, 여성 조합원은 5만 3,100명으로 34.6%를 차지했다.

<표 2-1> 회원조합의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남 성		여 성		법 인	
	조합원	비중	조합원	비중	조합원	비중	조합원	비중
조합원/ 비중	153,678	100.0	100,048	65.1	53,100	34.6	530	0.3

주 : 2021. 12. 31. 기준

수협은 <표 2-2>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일반적 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업종을 중심으로 결성된 업종별수협,

그리고 수산물가공업을 별도로 하여 설립된 수산물가공수협이다. 전국에 총 91개의 수협이 존재하는데, 이 중 지구별수협의 수는 70개로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수협은 19개, 수산물가공수협은 2개이다. 조합원의 경우 지구별수협이 14만 9,292명으로 대부분(97.1%)을 차지한다.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4,223명, 수산물가공수협은 163명이다.

〈표 2-2〉 수협 및 조합원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합 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91	153,678	70	149,292	19	4,223	2	163
비 중	100.0	100.0	76.9	97.1	20.9	2.7	2.2	0.1

주 : 2021. 12. 31. 기준

2) 지역별 회원조합 현황

수협의 지역별 현황은 지구별수협의 현황으로 살펴본다. 조합 및 조합원의 분포는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다. 먼저 조합 수를 살펴보면 전남과 경남이 각각 14개, 13개의 조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지역에 27개의 조합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국 대비 비중은 38.6%로 전남이 20.0%, 경남이 18.6%이다. 다음은 강원이 9개로 12.9%를 차지했으며, 충남과 경북이 8개씩 각각 11.4%의 비중을 보였다.

조합원 수는 전남이 가장 많다. 4만 6,620명으로 전국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은 전남에 비해 조합 수는 1개 적었지만 조합원 수는 2만 4,670명으로 전국 대비 비중 16.5%로 전남과는 14.7%p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전북으로 1만 3,873명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에 분포한 조합의 수가 4개임을 감안하면 조합 당 회원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전북의 조합당 회원 수는 3,468명으로 가장 많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조합당 회원 수는 486명에 불과하며, 지역 내 조합원 수도 4,378명으로 전국의 2.9%를 차지한다. 경북도 조합당 회원 수가 1,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897명인데, 지역 내 회원 수는 57,176명, 전국 대비 비중은 4.8%이다.

〈표 2-3〉 지역별 지구별수협 및 조합원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조 합	비 중	조 합 원	비 중
합 계	70	100.0	149,292	100.0
경기·인천	5	7.1	11,611	7.8
강 원	9	12.9	4,378	2.9
충 남	8	11.4	22,624	15.2
전 북	4	5.7	13,873	9.3
전 남	14	20.0	46,620	31.2
경 북	8	11.4	7,176	4.8
경 남	13	18.6	24,670	16.5
부산·울산	3	4.3	7,275	4.9
제 주	6	8.6	11,065	7.4

주 : 2021. 12. 31. 기준

3) 조합원 규모별 회원조합 현황

91개 수협의 조합원 수에 따른 분포는 〈표 2-4〉에 정리한 것과 같다. 1,000명 이하인 조합은 42개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였지만 실제 조합원 수는 1만 5,727명으로 전체의 10.2%에 불과하다. 다음은 조합원 수가 1,001명 이상 2,000명 이하로 20개 조합이 이에 해당하며, 2,001에서 3,000명 이하인 조합의 수는 13개이다.

〈표 2-4〉 조합원 수에 따른 조합 분포

(단위 : 개, 명, %)

구 분	합 계	1천 명 이하	1,001~ 2천 명	2,001~ 3천 명	3,001~ 4천 명	4,001~ 5천 명	5,001명 이상
조합	91	42	20	13	6	5	5
비중	100.0	46.2	22.0	14.3	6.6	5.5	5.5
조합원	153,678	15,727	27,813	30,914	21,031	22,843	35,350
비중	100.0	10.2	18.1	20.1	13.7	14.9	23.0

한편 조합원 수가 1,000명 이하인 지구별수협 22개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다음의 〈표 2-5〉에서 정리한 것과 같다. 먼저 500명 이하 조합의 경우 강원도에 6개가 집중되어 있다. 제주, 경북에는 각각 1개의 조합이 경남에는 3개의 조합이 조합원 수 500명 이하이다. 특히 강원도에는 총 9개 조합이 있는데, 강릉시수협을 제외한 8개 조합이 조합원 수 1,000명 이하이다. 이 중 6개 조합은 조합원 수가 50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라는 점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조합의 규모가 더욱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1명에서 1,000명 이하의 경우 경남과 전남에 각각 1개씩의 조합이 분포하고 있으며, 강원과 충남에는 2개씩이다. 그리고 경북은 5개의 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표 2-5〉 조합원 1천 명 이하 회원조합의 지역별 현황

구 분	지 역	회 원 조 합
합 계	22개	
500명 이하	강원(6개)	죽왕(217명), 원덕(252명), 대포(254명), 속초시(371명), 동해시(385명), 양양군(434명)
	제주(1개)	추자도(354명)
	경북(1개)	울릉군(365명)
	경남(3개)	창원서부(435명), 사량(458명), 욕지(488명)
500 ~ 1천 명 이하	경남(1개)	사천(553명)
	경북(5개)	강구(570명), 경주시(818명), 죽변(845명), 후포(845명), 영덕북부(877명)
	강원(2개)	삼척(623명), 강원고성군(742명)
	전남(1개)	거문도(670명)
	충남(2개)	서천군(888명), 서천서부(932명)

2.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제도

1) 관련 법규정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 2-6〉에 정리된 것과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제20조, 106조, 111조 등 3개 조에 걸쳐, 즉 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수협 등에서 요구되는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제29조는 준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업종별,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에서도 동 조합을 준용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각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

리고 지구별수협의 정관에서는 조합원의 자격, 준조합원,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표 2-6〉 조합원 자격 관련 규정

구 분	조 항	비 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106조, 111조	조합원의 자격
	제21조, 제29조	준조합원, 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4조, 제22조, 제23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조합원의 자격, 준조합원, 가입

2) 조합원의 요건

「수산업협동조합법」제20조의 조합원의 자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조합원의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직업은 “어업인이어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제2항의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요건을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 2-7〉에 정리한 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 가공수협 등 성격의 상이함으로 조합원의 요건도 공통적인 점과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 공통된 요건은 지역적인 점으로 구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업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상이한 요건의 경우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사기간은 연중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업종별수협과 수산물 가공수협의 조합원 직업은 대통

령령에 따른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 업종별수협은 19개 업종, 수산물 가공수협은 4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표 2-7〉 조합원의 요건

구 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 가공수협
직업	어업에 종사	19개 업종에 한함	4개 업종에 한함
기간	60일 이상	-	-
지역	구역 내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존재		
비고	어업법인 포함		

3. 농림어업인 및 조합원 자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차산업은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이다. 이들 산업에는 생산자협동조합이 결성되어있는데, 바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다.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을 정의하는 바가 각기 다르고 이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관련 법령에 정의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다음은 농림어업인의 개념, 각 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비교한 것이다.

1) 농림어업인의 개념

농림어업인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관련 법령은 세 가지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은 각 법의 시행령 등에 명기되

어 있다.

먼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기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다.⁴⁾

다음으로 어업인에 대한 정의이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는 “어업인”을 어업을 경영하는 자,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⁵⁾, 양식업종사자 그리고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명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①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④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⁶⁾

임업인에 대한 정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령에 다음의 네 가지로 명시

4)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양식어업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이다.(「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6)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했다. 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조합원의 자격

농림업에도 수산업과 같이 생산자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각각의 근거법을 가지고 있다. 각 근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이며, 조합원의 자격도 이 법,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보면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누에씨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④ 기준⁷⁾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⑤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⑥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다음의 <표 2-8>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2-8〉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 기준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자료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1]

7) 동법의 별표,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대한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산림조합의 조합원은 ①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①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도 300㎡부터 1,000㎡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조합원의 책임과 권리

1) 조합원의 책임 관련 규정

조합원은 조합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가진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에서는 조합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책임의 한도는 출자액으로 하며,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함은 물론 생산한 수산물은 조합을 통해 출하하는 등 사업을 성실히 이용해야 한다.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15조 역시 조합원의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와 같이 책임의 한도, 성실한 사업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조합원의 책임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업 이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되는 사업은 신용사업 중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른 경제·사회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등이다.

〈표 2-9〉 조합원의 책임 관련 규정

구 분	조 항	비 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	조합원의 책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15조	조합원의 책임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는 자익권(自益權)과 공익권(共益權)으로 나눌 수 있다. 자익권이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공익권은 조합의 운영에 참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조합활동에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 행사로 인한 효과는 자익권의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한 조합원에게만 귀속되는 반면 공익권은 조합과 조합원 전체에 귀속되는 특징이 있다(임종선, 2021).

조합원의 의무는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정관에 따라 부여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기초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권리 중 자익권은 사업 및 시설이용권, 잉여금 배당 청구권, 지분환급 청구권,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등이 있다. 조합사업의 이용, 조합 운영에 따른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소집 청구권 및 총회 안건 제안권, 의결 등의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권, 검사청구권 등이다. 조합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히 의결권 및 선거권은 조합원들이 여타 권리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조합원의 의무는 사업의 이용, 출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출자, 회전출자, 유한책임 및 손실액 부담, 조합 운영 참여 및 사업 이용,

부과된 경비 및 과태금 등의 납입, 가입신청서 기재 사항 변경 신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표 2-10〉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구 분		내 용	수협법	구 분		내 용	수협법
권 리	자 익 권	사업 및 시설이용권	32조	의무		출자	20조
		잉여금 배당 청구권	71조			회전출자	-
		지분환급 청구권	33조			유한책임 및 손실액 부담	25조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			조합 운영 참여 및 사업 이용	25조, 32조
	공 익 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27조			부과된 경비 및 과태금 등의 납입	-
		총회소집 청구권 및 총회 안건 제안권	38조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	-
		의결 등의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권	35조				
		검사청구권	174조				

5. 조합원 관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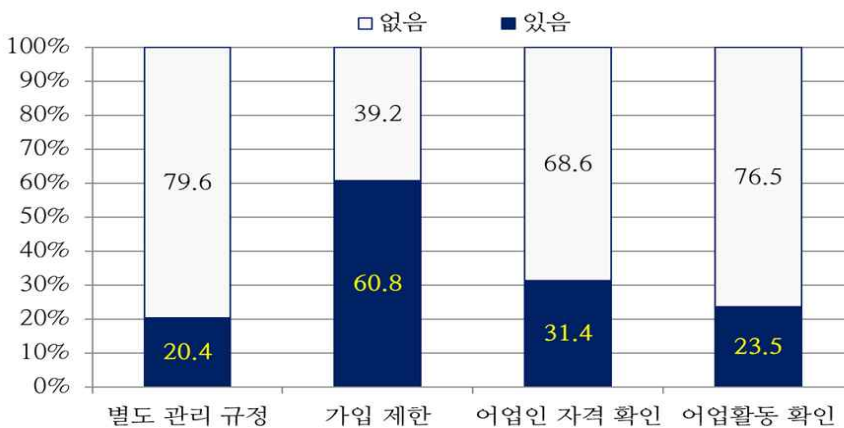
조합원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70개 지구별수협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한 조합은 52개소, 응답률은 74.3%이다.⁸⁾ 이 조사에서 파악하고자 한 점은 첫째, 조합원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 등이 있는가? 둘째, 신규조합원에 대한 제한 등이 존재하는가이다.

먼저 조합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별도로 제정한 규정 또는 관리 제도의 유무를 확인했다. 조합원에 대해 처음부터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응답이 60.8%였다. 응답 조합 중 약 70%는 별도의 관리

8) 이 조사는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조합 및 어업인 인식 조사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4장에서 다룬다.

규정, 어업인 자격 확인, 어업 활동 확인 등의 관리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참고) 이는 별도의 제도, 규정 자체를 만들기 힘들고, 여타 조합과의 업무 형평성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별도의 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가 힘들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원조합의 조합원 관리를 위한 노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별도의 관리 규정은 79.6%가 없다. 실제 조합원 관리를 위해 별도 규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합마다 의견을 달리했다. 다음은 가입 제한이다. 응답 조합의 60.8%가 실행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관리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업인 자격 확인은 68.6%가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선 조합원의 최초 가입 시 필요한 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즉, 지속적인 확인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업 활동 확인도 마찬가지이다. 76.5%의 조합이 조합원의 어업 활동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많은 수의 조합원이 행하는 어업 활동을 소수의 직원이 확인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림 2-1] 회원조합의 부문별 조합원 관리

신규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일정 기간 권리 일부를 제한한다. 조합원의 대표적인 권리는 사업 이용과 선거권 등이다. 먼저 조합의 사업에 대해서는 <표 2-11>에 정리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조합이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을 가하는 조합도 사업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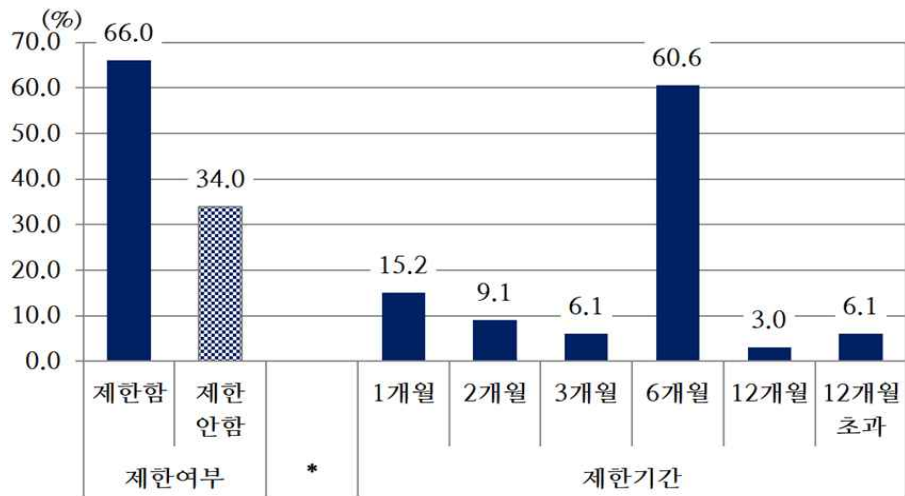
〈표 2-11〉 신규 조합원에 대한 조합사업 이용 제한 여부

(단위 : 개, %)

구 분	합 계	전면 제한	일부사업 제한	제한 안함
응답수	50	0	3	47
비 율	100.0	0.0	6.0	94.0

반면 선거권의 경우 신규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합이 66.0%였다. 제한 기간의 경우 6개월이 60.6%로 가장 많았고 1개월 15.2%, 2개월 9.1%, 3개월 6.1% 등의 순이었다.⁹⁾

9) 한편 신규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법이 선거권의 제한을 6개월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합의 응답오류로 판단된다.



[그림 2-2] 신규조합원 선거권 제한

제2절 선거 관리 현황

조합의 민주적 운영은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출자금 또는 투자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조합의 운영에서 선거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실제 조합원을 상대로 한 조합원 관리와 관련한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표 2-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자격 조합원 정비, 선거 관련 민원에 대해 응답한 비중이 28.3%로 나타났다(임종선, 2021). 이는 선거를 포함하여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현안 문제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크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2〉 조합원 관리와 관련한 현안 과제

(단위 : %)

구 분	합 계	의사소통부재			조합원 고령화	신규 조합원 감소	무자격 조합원 정비	선거 관련 민원	조합원 사업·용 저조	기타
		소계	조합- 조합원	조합원 간						
응답률	100.0	11.1	7.5	3.6	30.1	11	22.1	6.2	18.1	1.4

자료 : 임종선(2021)

1.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금의 적고 많음과는 별개로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

다. 이는 일반 회사법인과는 달리 협동조합으로서의 운영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권의 경우 신규조합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거를 목적으로 조합원의 부당한 가입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27조). 보궐선거 등도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1) 의결권

의결권이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당해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결권은 조합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공의권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의결권의 행사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1인이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¹⁰⁾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 중 대표자만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거권

선거권이란 조합원이 조합을 운영하는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권도 의결권과 동일한 1인 1표의 민주적 의결 원칙을 따른다.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

10) 의결권에 대한 대리행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의사를 총회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확대하고 총회 운영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황갑수, 2007)

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27조). 보궐선거 등에도 그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 행사요건을 정한 이유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조합원의 가입을 저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질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합장 등 회원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선출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3항). 첫째,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둘째,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셋째,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의결권과 달리 선거권의 경우 대리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3)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임원과 대의원 등의 직위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원에는 조합장을 포함하여 7명~11명까지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있다.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¹¹⁾ 대의원의 경우에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조합원이

11)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지구별수협 정관(예) 제55조 제1항).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이다. 둘째,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자이다. 셋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이다. 넷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다섯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여섯째,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일곱째,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여덟째,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100좌 이상의 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자이다. 다만 100좌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하향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의미한다.¹²⁾

2. 선거관리 규정의 운영

수협의 선거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대의원선거규정(예)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규정에 대해 개관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이 규정에서는 수협의 임원 즉,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수협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선거권의 경우 조합장 선거와 조합장 외 임원의 선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다시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 선출하는 곳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대상이 다르다. 먼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선거권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¹³⁾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이사

상향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아홉째, 금융기관에 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이다. 열째,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의 사업이용 실적이 일정 금액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다.

12) 대의원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지구별수협 정관(예) 제46조 제5항).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이다. 둘째,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자이다. 셋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이다. 넷째,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다섯째, 금융기관에 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이다. 여섯째,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이 일정 금액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다.

13)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

회 구성원이다. 단 대의원회의 대의원에는 조합장이 포함되지만 조합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피선거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있다. 다만, 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조합원 여부를 묻지 않는다.

2) 대의원 선거 규정

대의원 선거 규정은 해당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에 담긴 내용은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 선거일, 선거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 방법 등 대의원의 선거와 관련한 사항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조합원에게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하는 선거구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선거권은 대의원의 임기만료일¹⁴⁾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후보자 등록일 전일(前日)까지 이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임직원, 관할 어촌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14)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

제3절 시사점

이번 장에서는 조합원 현황 및 관리실태, 조합의 선거 관리 현황을 개관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어업인 자격에서 경영 규모 제한이 없으며, ② 어업인과 조합원의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③ 비정기적인 조합원 관리 시스템, 그리고 ④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1. 경영 규모에 따른 어업인 자격 미제한

앞에서 살펴본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의 정의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2-13>에 정리한 것과 같다. 최소 규모, 연간 판매액, 연간 활동일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업인과 임업인과는 달리 어업인 정의에서만 최소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연간 활동 일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표 2-13〉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의 정의

구 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최소 규모	1,000㎡	없음	3ha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세부적인 규모 명시		산림조합법에서 세부 규모 명기,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연간 판매액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연간 활동일수	90일	60일	90일

이는 수협의 조합원 자격에서도 나타나는데, 경영 규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협은 다음의 <표 2-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합원의 업종에 따라 최소 경영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부터 1,000㎡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4>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별 자격 규모

구 분	기 준	비 고
누에 사육자	0.5상자분 이상	2만립(粒) 기준 상자)
가축사육자	2마리	소, 말, 노새, 당나귀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돼지(젓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50마리	토끼
	100마리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군	꿀벌
원예작물 재배자	시설면적 330㎡ 이상	
화훼 재배자	농지면적 660㎡ 이상	

2. 어업인과 조합원의 자격 미일치

통상적으로 어업인은 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합원의 자격과 어업인의 자격을 비교해보면 양자 간의 자격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협의 조합원은 연간 활동일수 60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어업인은 연간 활동일수 이외 연간 판매액 120만 원인 경우에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이어도 수협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더 엄격한 것은 비단 수협만의 특징은 아니다. 농협,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 자격이 농업인 및 임업인의 자격보다 더 엄격하다. 즉 농협과 산림조합 역시 연간 판매액 기준을 조합원 자격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3. 부정기적 조합원 관리

체계적인 조합원 관리를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합 가입 시 조합원 가입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 이후 별도의 관리 규정이나 어업 활동 확인 등의 관리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가 힘들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자격 조합원 정리와 같은 업무는 연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수협중앙회의 등에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리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합원에 대한 관리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 또는 정기적인 업무가 아닌 연중 일상 업무화 되어 있다. 그리고 별도의 규정 또는 업무매뉴얼 등을 통한 시스템적인 조합원 관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선거관리 규정 준수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원 등 각종 선거는 조합의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수협은 각종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 선거규정(예), 대의원선거규정(예) 등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요컨대 선거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도 철저히 하고 있어, 이러한 기초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제 3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어선의 지분구조 분석

- 제 1 절 지분의 개념
- 제 2 절 어선 현황 및 지분구조 분석
- 제 3 절 지분 소유자 활동 현황
- 제 4 절 시사점



제 1 절 지분의 개념

1. 소유의 형태

지분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재산권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재산권(property rights)은 희소한 재화의 존재로부터 발생하며, 이것의 사용과 관련된 개인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재산권 중 물적자원의 소유와 관련된 재산권을 소유권(right of ownership)이라고 한다. 그 범위 상 협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소유권을 특징짓는 성격은 배타성, 양도성 그리고 소유에 대한 헌법적 보증이다(박상수, 2004).

소유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의 <표 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분의 경우 공유와 합유의 경우 공유지분, 합유지분 등으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총유는 그렇지 않다. 목적물의 처분과 변경은 공유와 합유의 경우 공유자 및 합유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총유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지분의 처분은 공유에서는 자유이지만 합유에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총유에서는 처음부터 지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의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 분할 청구는 공유는 자유로운 데 반해 합유와 총유는 불가하다. 보존행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유와 합유는 각자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총유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사용과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른다. 하지만 합유는 조합계약, 총유는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등기의 경우 공유와 합유는 공유자 또는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가능하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표 3-1〉 소유형태에 따른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
지분	공유지분	합유지분	없음
목적물 처분, 변경	공유자 전원 동의	합유자 전원 동의	사원총회 결의 필요
지분 처분	자유	합유자 전원 동의	지분 없음
분할 청구	자유 (단, 5년 내 기간 금지 특약 가능)	불가 (단, 조합체 해산 후에는 가능)	불가
보존 행위	각자 단독으로 가능	각자 단독으로 가능	총회결의
사용·수익	지분 비율로 전체 사용	조합계약에 의함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함
등기	공유자 전원 명의로 지분 등기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	비법인 사단의 단독명의로 등기

자료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 수산부문에서의 어선 공동 소유

수산부문에서 어민들이 시설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어선을 건조하고 어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형태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실제 수협중앙회에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어선을 구매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등을 교육했다(고석환, 1983).

어선어업에서 어선은 매우 중요한 생산수단이지만 구매 또는 신조 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선 구매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자금부담을 경감하기도 한다. 또한 어선은 고가의 재산이므로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가족 간 어선의 공동 소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어선의 소유 형태가 공유라고 할 것이다.

어촌계 등에서 어선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도 발견할 수 있다. 어촌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어장의 관리 등을 위해 어촌계원들이 출자하여 어선을 구매 또는 신조(新造)하는 경우이다. 이때 어촌계원 모두가 어선의 구매 또는 신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어촌계원 일부가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촌계원 간 어선의 지분 크기는 동일하게 책정한다.

제 2 절 어선 현황 및 지분구조 분석

본 절에서는 어선 현황을 정리하고, 어선의 소유 지분 자료를 수집하여 그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결과가 포함된다.

1. 등록 어선 현황

1) 어선수 변화 동향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감척사업의 영향으로 어선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0년 9만 5,890척이던 어선 수는 2010년 7만 6,974척으로 줄었으며, 2020년 현재 6만 5,744척으로 2000년의 68.6% 수준이다.(〈표 3-2〉 참조)

동력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동력선은 6만 4,987척으로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동력선은 757척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표 3-2〉 연도별 어선 수 변화 동향

(단위 : 척,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합 계	95,890	90,735	76,974	67,226	65,744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동력선	89,294	87,554	74,669	66,234	64,987
비 중	93.1	96.5	97.0	98.5	98.8
무동력선	6,596	3,181	2,305	992	757
비 중	6.9	3.5	3.0	1.5	1.2

자료 :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 각 연도.

2) 시도별 어선 분포 현황

시도별로는 <표 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남의 어선 수가 2만 7,966척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국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남이 1만 3,564척, 전국 대비 2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충남 5,490척(8.4%), 부산과 경북이 각각 3,333척(5.1%), 3,285척(5.0%)이다. 나머지 지역의 어선 수는 3,000척에 미치지 못한다.

〈표 3-3〉 시도별 어선 수 현황

(단위 : 척, %)

구 분	합 계	비 중	동력선	비 중	무동력선	비 중
합 계	65,744	100.0	64,987	98.8	757	1.2
부 산	3,333	5.1	3,330	5.1	3	0.0
인 천	1,417	2.2	1,402	2.1	15	0.0
울 산	825	1.3	816	1.2	9	0.0
경 기	1,810	2.8	1,640	2.5	170	0.3
강 원	2,783	4.2	2,725	4.1	58	0.1
충 남	5,490	8.4	5,437	8.3	53	0.1
전 북	2,897	4.4	2,833	4.3	64	0.1
전 남	27,966	42.5	27,884	42.4	82	0.1
경 북	3,285	5.0	3,171	4.8	114	0.2
경 남	13,564	20.6	13,428	20.4	136	0.2
제 주	1,921	2.9	1,921	2.9	0	0.0
기 타	453	0.7	400	0.6	53	0.1

주 : 기타는 세종, 대구, 충북임

자료 :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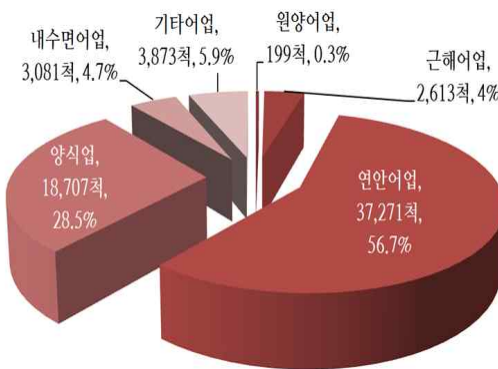
3) 어업별 어선 분포 현황

어업별 어선의 분포는 [그림 3-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연안어업에 총 3

만 7,271척의 어선이 분포하여 전체의 56.7%를 점하고 있다. 다음은 양식업인데, 1만 8,707척으로 28.5%를 차지하고 있다. 근해어업의 어선수는 2,613척으로 전체의 4.0%에 불과하다.

어선수가 가장 많은 연안어업의 경우 업종별로는 <표 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안복합어업과 연안유자망어업이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연안복합어업은 1만 6,638척(44.6%), 연안유자망어업은 1만 2,288척(33.0%)이다.

〈표 3-4〉 연안업종별 어선수 현황



(단위 : 척, %)

구 분	어선 수	비 중
합 계	37,271	100.0
연안유자망어업	12,288	33.0
연안통발어업	4,723	12.7
연안복합어업	16,638	44.6
연안안강망어업	400	1.1
구획어업 (정치성+이동성)	2,210	5.9
정치망어업	640	1.7
기타	37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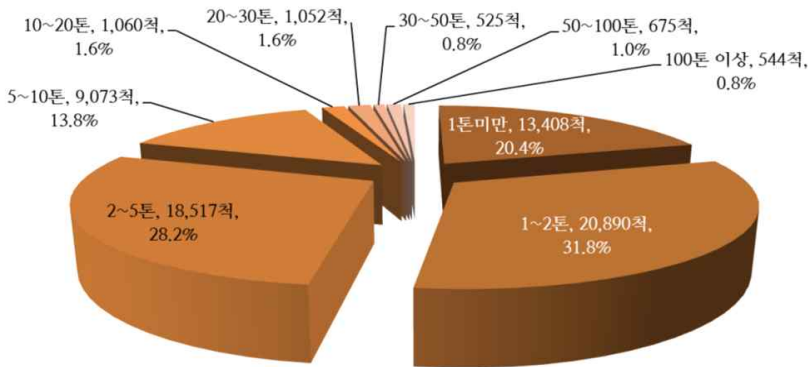
주 : 기타는 형망, 선망, 연승, 채낚기, 들망, 조망, 선인망 등임

[그림 3-1] 어업별 어선수 현황

4) 톤수별 분포 현황

톤수별로는 5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의 비중이 전체의 80.4%에 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2]에서 보는 것과 같다. 1톤 미만 어선의 경우 총 1만 3,408척으로 전체의 20.4%, 1톤 이상 2톤 미만 어선은 2만 890척, 전체 대비 31.8%를 차지한다. 그리고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1만 8,517척으로 전체의 28.2%를 점하고 있다. 또한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도 9,073척(13.8%)으로 10톤 이하 어선이 94.2%로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실제 10~20톤은 1,060척, 20~30톤은 1,052척으로 각각 1.6%씩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규모의 어선 비중은 1.0% 이하이다.



[그림 3-2] 어선 톤수별 분포 현황

10톤 이하의 어선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5>에서 보는 것과 같다. 1톤 미만 어선의 경우 전남에 6,591척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전남에 1톤 미만 어선이 집중된 것은 양식장 관리선의 영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 전남의 경우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 전복 양식, 여타 패류 양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전남 외 지역으로는 경남이 2,291척, 경기도가 922척 등으로 전체 대비 각각 3.7%, 1.5%를 차지한다.

1~2톤 어선도 전남에 1만 500척이 분포되어 전체 대비 17.0%의 비중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경남으로 4,349척으로 전국 대비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과 충남에도 1,000척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2~5톤의 경우 전남 5,971척, 경남 5,169척이 분포하며, 이 두 지역이 전체의 18.0%를 점하고 있다. 5~10톤 어선에서는 전남이 3,795척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충남 1,188척, 경남에 1,043척, 나머지 지역은 1,000척이 되지 않는다.

〈표 3-5〉 10톤 이하 어선의 시도별 분포 현황

(단위 : 척, %)

구분	합계	비중	1톤 미만	비중	1~2톤	비중	2~5톤	비중	5~10톤	비중
합계	61,888	100.0	13,408	21.7	20,890	33.8	18,517	29.9	9,073	14.7
부산	2,132	3.4	673	1.1	1,385	2.2	620	1.0	127	0.2
인천	1,270	2.1	75	0.1	231	0.4	516	0.8	523	0.8
울산	648	1.0	117	0.2	391	0.6	170	0.3	87	0.1
경기	882	1.4	922	1.5	274	0.4	386	0.6	222	0.4
강원	2,114	3.4	444	0.7	742	1.2	1,023	1.7	349	0.6
충남	4,387	7.1	867	1.4	1,256	2.0	1,943	3.1	1,188	1.9
전북	2,458	4.0	335	0.5	998	1.6	951	1.5	509	0.8
전남	20,266	32.7	6,591	10.6	10,500	17.0	5,971	9.6	3,795	6.1
경북	2,298	3.7	549	0.9	640	1.0	1,028	1.7	630	1.0
경남	10,561	17.1	2,291	3.7	4,349	7.0	5,169	8.4	1,043	1.7
제주	1,455	2.4	100	0.2	116	0.2	739	1.2	600	1.0
기타	9	0.0	444	0.7	8	0.0	1	0.0	0	0.0

주 : 기타는 세종, 대구, 충북임

자료 :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 2020년.

연안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표 3-6〉에 정리한 것과 같다. 톤급별로는 2~5톤 어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1~2톤 어선도 비슷한 비중을 보여 소규모 어업에 집중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1~2톤 어선이 6,304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5톤급 5,347척이다. 1톤 미만 어선의 수도 2,760척에 달했다. 연안유자망어업에서는 연안복합어업과는 달리 2~5톤 어선이 5,039척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2톤급 어선 4,027척이었고, 1톤 미만 어선은 1,255척이다.

한편 정치망어업은 여타 업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톤 이상이 214척으로 가장 많으며, 5~10톤 135척 등 상대적으로 큰 규모 어선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3-6〉 연안업종의 톤수별 어선 분포 현황

(단위 : 척, %)

업 종	합 계	무동력선	동력선					
			소 계	1톤 미만	1~2톤	2~5톤	5~10톤	10톤 이상
합 계	37,271	291	36,980	4,833	12,947	13,370	5,612	218
비 중	100.0	0.8	99.2	13.0	34.7	35.9	15.1	0.6
연안유자망어업	12,288	87	12,201	1,255	4,027	5,039	1,879	1
연안통발어업	4,723	11	4,712	390	1,651	2,169	502	0
연안복합어업	16,638	71	16,567	2,760	6,304	5,347	2,155	1
연안안강망어업	400	0	400	1	15	48	336	0
구획어업 (정치성+이동성)	2,210	70	2,140	357	819	566	396	2
정치망어업	640	49	591	64	81	97	135	214
기타	372	3	369	6	50	104	209	0

주 : 기타는 형망, 선망, 연승, 채낚기, 들망, 조망, 선인망 등임

자료 :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 2020년.

2. 어선 지분구조 분석

1) 분석 개요

어선의 지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어선에 대한 지분 현황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어선의 규모, 업종 등의 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앞선 어선 현황 분석에서 사용한 「등록 어선 통계」는 우리나라 어선의 수, 톤급 및 어업·업종별, 선질별 어선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별 어선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는 점, 소유 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한다는 점으로 분석에 사용하기 어렵다.

자료는 정부의 어선등록 시스템 상의 정보, 시도별 어선등록 정보, 수협 중앙회의 유류사용 등록 정보 등이 있으며, 이 중 시도별 어선등록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수협중앙회의 자료는 총 현황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지역 및 개별 어선별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단점을 가진다. 정부의 어선등록 시스템 상 정보는 시도별 어선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의 어선등록시스템의 정보보다는 시도별 어선등록 정보의 수집을 통해 지분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분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입수에 크게 기여했다.

자료의 입수는 해양수산부가 주체가 되어 각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한 후 수협중앙회의 연구진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양수산부 문서 시행 → 각 지자체 자료 작성 및 송신 → 해양수산부 자료 취합 → 수협중앙회로 자료 전달로 이루어졌다. 자료 취합 기간은 2022. 4. 14 ~ 3. 11로 1개월이다.

이렇게 취합된 자료는 <표 3-7>에서 보는 것과 같다. 2020년을 기준으로 어선등록통계 상 어선 수는 총 6만 5,744척인데 수집된 어선 수는 5만 9,453척으로 어선등록통계 대비 90.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의 어선 자료는 취합하지 못했다. 부산의 경우 1인 소유 선박에 대한 톤급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전체 어선의 톤급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하지만 지분 소유 선박의 정보는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분구조의 분석에서는 포함했다.

한편 분석 방법은 기초 통계 분석방법을 사용했다. 빈도 파악, 각 집단 구분, 비교 분석 등을 실시했다. 집단의 구분은 지역, 톤 급, 업종, 지분권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3-7〉 분석 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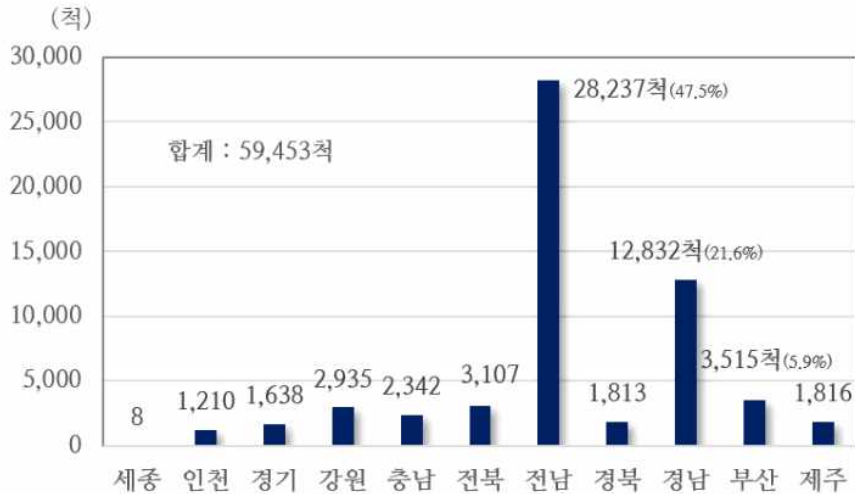
(단위 : 척)

구 분	어선등록통계 (2020 기준)	시도 취합 자료 (2022 기준)	비 고
합 계	65,744	59,453	• 어선등록통계 대비 90.4%
세 종	8	8	
부 산	3,333	3,515	• 1인 소유 어선의 톤급 정보 누락
대 구	6	-	• 미취합
인 천	1,417	1,210	•
울 산	825	-	• 미취합
경 기	1,810	1,638	
강 원	2,783	2,935	
충 북	439	-	• 미취합
충 남	5,490	2,342	
전 북	2,897	3,107	
전 남	27,966	28,237	
경 북	3,285	1,813	
경 남	13,564	12,832	
제 주	1,921	1,816	

2) 분석 대상 어선의 분포 현황

(1) 지역별 분포

분석 대상 5만 9,453척의 지역별 분포는 [그림 3-3]에서 보는 것과 같다. 전남의 어선이 2만 8,237척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경남 1만 2,832척(21.6%), 부산 3,515척(5.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북의 어선도 3,000척 이상을 기록했는데, 3,107척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여타 지역의 경우 제주, 경북, 경기 등에 1,000척 이상의 어선이 분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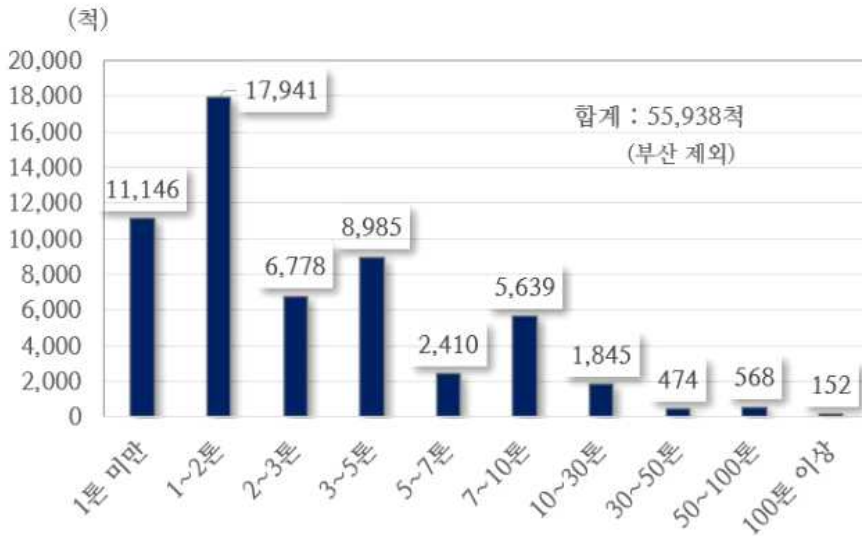
[그림 3-3] 지역별 분석 대상 어선 분포 현황

(2) 톤급별 분포

톤급별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소유 선박의 톤급 정보가 누락된 부산을 제외하고 분석했다. 즉 전체 어선 5만 9,453척에서 부산의 선박을 제외한 5만 5,938척이 분석 대상이다.

1~2톤급이 1만 7,941척, 1톤 미만 급이 1만 1,146척으로 전체 대비 각각 32.1%, 19.9%를 차지하여 2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그림 3-4] 참고)

3~5톤 8,985척, 2~3톤 6,778척, 3~5톤 8,985척으로 5톤 미만 소규모 어선의 비중은 전체의 80.2%에 달했다. 여기에 5~7톤 2,410척과 7~10톤 5,639척을 합한 10톤 미만급 어선의 전체 대비 비중은 94.6%를 차지했다. 즉, 연안어업에 종사는 어선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그림 3-4] 참고)



[그림 3-4] 톤급별 분석 대상 어선 분포 현황

(3) 지역·톤급별 분포

지역·톤급별 분포 역시 1인 소유 선박의 톤급 정보가 누락된 부산을 제외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별로 어선의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남과 경남, 전북은 1~2톤 어선, 제주는 3~5톤 어선, 경기도는 1톤 미만 어선의 비중이 여타 톤급에 비해 높았다.(〈표 3-8〉 참고)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은 8척 모두 1톤 미만이었다. 인천은 3~5톤급이 288척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톤 미만이 733척으로 전체 어선 대비 1.3%의 비중을 보였다. 강원은 1~5톤에 걸쳐 어선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 이들 톤급에 1,857척이 분포하여, 전체 대비 3.3%의 비중을 차지했다. 충남은 3~5톤, 7~10톤의 어선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전체 대비 각각 0.9%씩의 비중을 보였다. 전북은 1~2톤급에 1,067척이 분포하여 전체 대비 비중도 1.9%로 높은 편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선이 분포하는 전남에서는 1~2톤, 1톤 미만급에 총 1만 7,145척이 집중되어 전체 어선 대

비 비중은 30.7%에 달했다. 경북은 1~2톤, 3~5톤급에 735척이 집중되어 전체 대비 1.4%, 각각 0.7%씩의 비중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어선이 분포한 경남은 경북과 같이 1~2톤, 3~5톤급에 어선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 1~2톤은 4,275척, 3~5톤은 2,632척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각각 7.6%, 4.7%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3~5톤급의 어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톤급에 해당하는 어선은 567척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1.0%를 기록했다.(<표 3-8> 참고)

〈표 3-8〉 지역별·톤급별 분석 대상 어선 분포 현황

(단위 : 척, %)

구 분	합 계	1톤 미만	1~ 2톤	2~ 3톤	3~ 5톤	5~ 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100톤 이상
합 계	55,938	11,146	17,941	6,778	8,985	2,410	5,639	1,845	474	568	152
비중	100.0	19.9	32.1	12.1	16.1	4.3	10.1	3.3	0.8	1.0	0.3
세 중	8	8	0	0	0	0	0	0	0	0	0
비중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 천	1,210	51	174	151	288	90	407	15	6	26	2
비중	2.2	0.1	0.3	0.3	0.5	0.2	0.7	0.0	0.0	0.0	0.0
경 기	1,638	733	262	155	240	67	170	6	0	4	1
비중	2.9	1.3	0.5	0.3	0.4	0.1	0.3	0.0	0.0	0.0	0.0
강 원	2,935	465	784	565	508	161	209	173	24	43	3
비중	5.2	0.8	1.4	1.0	0.9	0.3	0.4	0.3	0.0	0.1	0.0
충 남	2,342	449	371	274	529	105	505	67	31	9	2
비중	4.2	0.8	0.7	0.5	0.9	0.2	0.9	0.1	0.1	0.0	0.0
전 북	3,107	347	1,067	628	409	104	449	69	8	23	3
비중	5.6	0.6	1.9	1.1	0.7	0.2	0.8	0.1	0.0	0.0	0.0
전 남	28,237	6,602	10,543	2,572	3,441	1,240	2,590	881	127	156	85
비중	50.5	11.8	18.8	4.6	6.2	2.2	4.6	1.6	0.2	0.3	0.2
경 북	1,813	256	364	214	371	139	208	159	42	59	1
비중	3.2	0.5	0.7	0.4	0.7	0.2	0.4	0.3	0.1	0.1	0.0
경 남	12,832	2,150	4,275	2,102	2,632	248	757	296	111	206	55
비중	22.9	3.8	7.6	3.8	4.7	0.4	1.4	0.5	0.2	0.4	0.1
제 주	1,816	85	101	117	567	256	344	179	125	42	0
비중	3.2	0.2	0.2	0.2	1.0	0.5	0.6	0.3	0.2	0.1	0.0

주 : 톤급 정보가 없는 부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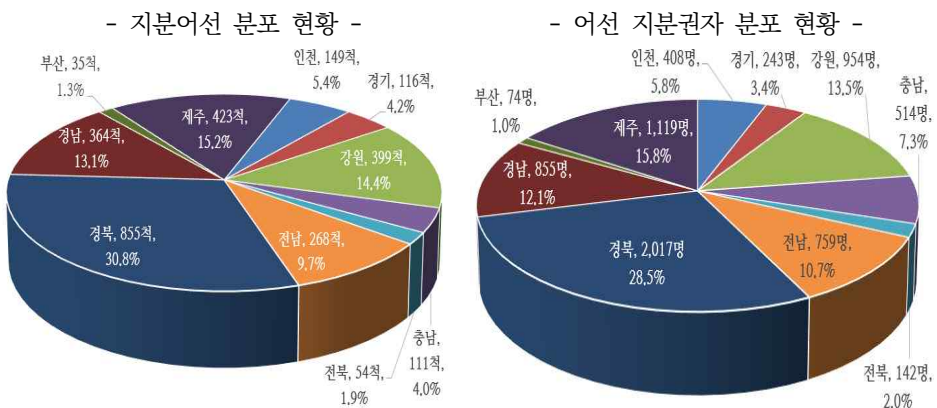
3)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현황

지분으로 소유권이 분할 되어 소유권자가 복수인 어선을 본 연구에서는 ‘지분어선’으로 표현했다.

(1) 총괄 현황

총 5만 9,453척 중 지분어선은 2,774척으로 4.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55척으로 전국의 3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제주는 423척으로 전국 대비 15.2%를 차지했고, 강원 399척, 전국 대비 14.4%의 비중을 보였다. 경남은 364척, 전남은 268척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13.1%, 9.7%였다.([그림 3-5] 참고)

지분어선을 소유한 지분권자는 7,08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분어선이 가장 많은 경북에 2,017명이 분포하고 있어 전국 대비 비중도 28.5%로 가장 높았다. 여타 지역은 제주 1,119명, 전국 대비 15.8%, 강원은 954명으로 전국의 13.5%를 차지했다. 경남은 855명, 전남 759명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12.1%, 10.7%였다.([그림 3-5] 참고)



[그림 3-5] 지역별 지분어선 및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2) 톤급별 지분어선 분포

지분어선의 톤급 분포를 보면, 1~2톤 551척, 3~5톤이 528척으로 전체 대비 각각 19.9%, 19.0%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2~3톤급의 경우 331척, 7~10톤급 313척, 10~30톤급은 266척 등으로 나타났다. 1톤 미만 급의 경우도 248척이었다. 이렇게 10톤 미만의 지분어선은 총 5,178척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그림 3-6] 참고)



[그림 3-6] 톤급별 지분어선 분포 현황

(3) 지역·톤급별 지분어선 분포

지역별 톤급별로 지분어선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지분어선에서도 규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1~2톤급, 3~5톤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3-9> 참고)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천의 경우 3~5톤급이 34척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7~10톤급, 1~2톤급도 각각 28척, 27척이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는 1톤 미만급의 수가 39척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2톤급, 3~5톤급이었다. 강원도의 경우 1~2톤급이 106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톤급, 3~5톤급의 순이었다. 충남은 여타 톤급에 비해 1톤 미만급과 7~10톤급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전북은 1~2톤급에 14척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전남은 여타 지역에 비해 10톤 이상 어선의 비중이 높았다. 50~100톤급과 10~30톤급에 각각 52척과 46척이 분포되어 있는데, 전체 지분어선 대비 비중도 1.9%, 1.7%였다. 지분어선이 가장 많은 경북의 경우 1~2톤의 비중이 높았다. 206척으로 전체 대비 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톤급은 163척의 3~5톤급으로, 5.9%의 비중을 보였다. 경남은 1~2톤급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83척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3.0%를 기록했다. 다음은 부산이다. 부산 역시 3~5톤급과 1~2톤급에 지분어선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 3~5톤급은 10척, 1~2톤급은 7척이었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0.4%, 0.3%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3~5톤급에 집중된 특징을 보였다. 3~5톤급 지분어선 수는 111척으로 전국 지분어선의 4.0%를 차지했다.(〈표 3-9〉 참고)

〈표 3-9〉 지역별·톤급별 지분어선 분포 현황

(단위 : 척, %)

구 분	합계	1톤 미만	1~ 2톤	2~ 3톤	3~ 5톤	5~ 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100톤 이상
합 계	2,774	248	551	331	528	139	313	266	147	213	38
비중	100.0	8.9	19.9	11.9	19.0	5.0	11.3	9.6	5.3	7.7	1.4
인 천	149	5	27	21	34	6	28	8	3	15	2
비중	5.4	0.2	1.0	0.8	1.2	0.2	1.0	0.3	0.1	0.5	0.1
경 기	116	39	26	7	24	5	14	1	0	0	0
비중	4.2	1.4	0.9	0.3	0.9	0.2	0.5	0.0	0.0	0.0	0.0
강 원	399	19	106	85	81	31	33	16	10	18	0
비중	14.4	0.7	3.8	3.1	2.9	1.1	1.2	0.6	0.4	0.6	0.0
충 남	111	31	13	15	12	4	24	7	3	2	0
비중	4.0	1.1	0.5	0.5	0.4	0.1	0.9	0.3	0.1	0.1	0.0
전 북	54	9	14	6	2	2	4	7	2	8	0
비중	1.9	0.3	0.5	0.2	0.1	0.1	0.1	0.3	0.1	0.3	0.0
전 남	268	10	41	18	24	6	29	46	27	52	15
비중	9.7	0.4	1.5	0.6	0.9	0.2	1.0	1.7	1.0	1.9	0.5
경 북	855	87	206	118	163	44	91	76	28	41	1
비중	30.8	3.1	7.4	4.3	5.9	1.6	3.3	2.7	1.0	1.5	0.0
경 남	364	36	83	26	67	5	22	42	14	55	14
비중	13.1	1.3	3.0	0.9	2.4	0.2	0.8	1.5	0.5	2.0	0.5
부 산	35	0	7	1	10	0	0	3	3	5	6
비중	1.3	0.0	0.3	0.0	0.4	0.0	0.0	0.1	0.1	0.2	0.2
제 주	423	12	28	34	111	36	68	60	57	17	0
비중	15.2	0.4	1.0	1.2	4.0	1.3	2.5	2.2	2.1	0.6	0.0

주 : 세종시는 지분어선이 없음

(4) 톤급별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어선의 지분권자는 지분어선의 톤급 분포와 마찬가지로 1~2톤급, 3~5톤급의 비중이 높았다. 가장 많은 수의 지분권자가 분포한 톤급은 3~5톤급으로 1,290명, 전체의 18.2%를 차지했다. 다음은 1~2톤급인데 지분권자의 수는 1,266명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17.9%이다. 여타 톤급은 2~3톤급이 878명으로 전체의 12.4%, 7~10톤급 732명, 전체의 10.3%를 차지했다. 10~30톤급은 684명, 50~100톤급은 677명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각각

9.7%, 9.6%를 기록했다.([그림 3-7] 참고)



[그림 3-7] 톤급별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5) 지역·톤급별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지분권자의 분포를 지역과 톤급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톤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의 1톤 미만급, 제주의 3~5톤급 정도만이 어선의 지분권자가 상대적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10톤 이상급에서는 전남 50~100톤급과 10~30톤, 전북의 10~30톤급의 상대적 분포도가 높았다.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천의 경우 3~5톤급에 지분권자가 집중되었다. 총 70명으로 전체 대비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는 1톤 미만급에 81명이 집중된 가운데, 1~2톤급, 3~5톤급에도 각각 54명, 49명이 분포했다. 강원은 1~5톤에 걸쳐 지분권자의 수가 각 톤급별 200명 이상 분포했다. 1~2톤급은 241명, 2~3톤급과 3~5톤급은 각각 214명과 206

명이었다. 충남도 3개의 톤급에 지분권자의 분포가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1톤 미만급에 1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3톤급과 30~50톤급에 각각 108명, 104명이 분포했다. 전북은 10~30톤급 34명, 1~2톤급 30명으로 여타 톤급에 비해 많은 지분권자가 분포했다. 전남은 여타 지역에 비해 대형어선의 비중이 높았는데, 지분권자 수 역시 대형어선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50~100톤급 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30톤급도 162명이었다.(〈표 3-10〉 참고)

〈표 3-10〉 지역별·톤급별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계	1톤 미만	1~ 2톤	2~ 3톤	3~ 5톤	5~ 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100톤 이상
합 계	7,085	698	1,266	878	1,290	314	732	684	455	677	91
비중	100.0	9.9	17.9	12.4	18.2	4.4	10.3	9.7	6.4	9.6	1.3
인 천	408	23	56	43	70	12	56	34	20	88	6
비중	5.8	0.3	0.8	0.6	1.0	0.2	0.8	0.5	0.3	1.2	0.1
경 기	243	81	54	17	49	10	30	2	0	0	0
비중	3.4	1.1	0.8	0.2	0.7	0.1	0.4	0.0	0.0	0.0	0.0
강 원	954	45	241	214	206	64	78	42	21	43	0
비중	13.5	0.6	3.4	3.0	2.9	0.9	1.1	0.6	0.3	0.6	0.0
충 남	514	164	30	108	26	11	51	16	104	4	0
비중	7.3	2.3	0.4	1.5	0.4	0.2	0.7	0.2	1.5	0.1	0.0
전 북	142	18	30	12	4	4	8	34	8	24	0
비중	2.0	0.3	0.4	0.2	0.1	0.1	0.1	0.5	0.1	0.3	0.0
전 남	759	21	95	37	57	12	58	162	87	198	32
비중	10.7	0.3	1.3	0.5	0.8	0.2	0.8	2.3	1.2	2.8	0.5
경 북	2,017	202	473	271	381	113	225	173	61	115	3
비중	28.5	2.9	6.7	3.8	5.4	1.6	3.2	2.4	0.9	1.6	0.0
경 남	855	113	170	55	150	11	41	92	28	159	36
비중	12.1	1.6	2.4	0.8	2.1	0.2	0.6	1.3	0.4	2.2	0.5
부 산	74	0	14	2	20	0	0	6	8	10	14
비중	1.0	0.0	0.2	0.0	0.3	0.0	0.0	0.1	0.1	0.1	0.2
제 주	1,119	31	103	119	327	77	185	123	118	36	0
비중	15.8	0.4	1.5	1.7	4.6	1.1	2.6	1.7	1.7	0.5	0.0

주 : 세종시는 어선지분권자가 없음

지분권자가 가장 많은 경북은 1~2톤급과 3~5톤급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2톤급에는 473명, 3~5톤급에 381명이 분포했다. 경남도 1~2톤급과 3~5톤급에 지분권자가 많았으며, 50~100톤급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집중되었다. 1~2톤급에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3~5톤급과 50~100톤급에는 각각 150명과 159명이 분포했다. 부산은 3~5톤급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톤급과 100톤 이상급이 14명씩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3~5톤급에 327명이 집중되었다.

4) 지역·업종별 지분어선 현황

(1) 개 황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의 업종별 분포는 각 지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지분어선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주요 업종을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와 관련한 업종은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어획물운반업, 기선권현망어업 등이 주요했다. 어획물운반업은 인천, 전북, 전남지역, 기선권현망어업은 전남과 경남 등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또한 대형트롤어업은 부산에서 잠수기어업은 충남에서 주요한 업종 중 하나였다.

〈표 3-11〉 지역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관련 주요 업종 현황

지역	주요 업종	지역	주요 업종
인천	어획물운반업,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전남	연근해어획물운반업, 연안복합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경기	연안자망어업, 자망어업	경북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강원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경남	연안복합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충남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잠수기어업, 낚시어선	부산	연안복합어업, 대형트롤어업
전북	연근해어획물운반업,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양식업(수하식), 근해안강망어업	제주	연안복합어업, 근해연승어업

주 : 각 지역별 지분어선 또는 지분권자의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업종임

(2) 인천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지분어선의 경우 연안복합어업이 47척, 연안자망어업인 35척으로 전체 대비 각각 31.5%,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복합어업과 연안자망어업의 복합 허가 어선도 5척이었다.(〈표 3-12〉 참고)

지분권자의 분포는 어획물운반업이 136명으로 전체 대비 33.3%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연안복합어업 99명, 비중은 24.3%였다.

〈표 3-12〉 인천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 계	149	100.0	408	100.0
근해안강망어업	4	2.7	10	2.5
근해자망어업	1	0.7	8	2.0
근해잡수기어업	6	4.0	12	2.9
연안개량안강망어업	4	2.7	8	2.0
연안복합어업	47	31.5	99	24.3
연안자망어업	35	23.5	70	17.2
연안통발어업	6	4.0	12	2.9
실뱀장어안강망어업	1	0.7	2	0.5
연안자망/연안복합	5	3.4	10	2.5
건강망어업	13	8.7	29	7.1
마을어업	1	0.7	12	2.9
어획물운반업	26	17.4	136	33.3

(3) 경기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경기지역은 연안자망어업과 자망어업이 여타업종에 비해 지분어선과 지분권자의 분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분어선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40척, 자망어업 22척으로 전체 대비 각각 34.5%, 19.0%를 차지했으며, 지분권자도 연안자망어업 84명(34.6%), 자망어업 46명(18.9%)이었다.(〈표 3-13〉 참고)

〈표 3-13〉 경기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 계	116	100.0	243	100.0
잠수기	1	0.9	2	0.8
연안개량안강망어업	5	4.3	10	4.1
연안복합어업	9	7.8	20	8.2
연안자망어업	40	34.5	84	34.6
연안통발어업	4	3.4	8	3.3
각망어업	3	2.6	6	2.5
낭장망어업	3	2.6	6	2.5
자망어업	22	19.0	46	18.9
정치어업	1	0.9	2	0.8
각망/연승	2	1.7	4	1.6
각망/종묘채포	11	9.5	23	9.5
자망/종묘채포	1	0.9	2	0.8
연승/패류	1	0.9	2	0.8
자망/패류	2	1.7	4	1.6
각망/연승/종묘채포	1	0.9	2	0.8
양식업	3	2.6	8	3.3
연근해어획물운반업	6	5.2	12	4.9
-	1	0.9	2	0.8

주 : '-'는 업종 미가입 어선임

(4) 강원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의 분포에서 연안자망어업의 비중이 40%대를 보이면서 두드러진 가운데, 연안복합어업의 비중도 25%를 상회하였다. 지분어선의 경우 연안자망어업의 비중은 40.9%, 연안복합어업은 28.1%로, 이 두 업종의 비중은 전체의 69.0%에 달한다. 지분권자의 분포 역시 연안자망어업 41.4%, 연안복합어업 25.1%를 기록했다.(〈표 3-14〉 참고)

〈표 3-14〉 강원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 계	399	100.0	954	100.0
근해채낚기어업	4	1.0	9	0.9
근해통발어업	13	3.3	32	3.4
동해구중형트롤	1	0.3	2	0.2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2	0.5	4	0.4
연안복합어업	112	28.1	239	25.1
연안선망어업	1	0.3	8	0.8
연안자망/연안복합	21	5.3	46	4.8
연안자망/연안복합/연안통발	2	0.5	4	0.4
연안자망어업	163	40.9	395	41.4
연안통발어업	15	3.8	35	3.7
패류형망어업	8	2.0	23	2.4
승망어업	1	0.3	2	0.2
건망어업	3	0.8	20	2.1
호망어업	2	0.5	11	1.2
자망어업	4	1.0	10	1.0
대형정치망어업	3	0.8	9	0.9
중형정치망어업	4	1.0	14	1.5
소형정치망어업	1	0.3	2	0.2
마을어업	5	1.3	18	1.9
양식업(가두리)	1	0.3	3	0.3
양식업(수하식)	6	1.5	12	1.3
-	27	6.8	56	5.9

주 : '-'는 업종 미기입 어선임

(5) 충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충남은 지분어선의 경우 어느 한 업종에 집중되기 보다는 복수의 업종에 분포하였지만 지분권자는 특정 소수 업종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먼저 지분어선은 잠수기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낚시어업 등의 비중이 각각 10%를 상회했다. 반면 지분권자는 연근해어획물운반업에 22.4%, 낚시어업에 16.0%가 집중되었다.(〈표 3-15〉 참고)

〈표 3-15〉 충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계	111	100.0	514	100.0
근해안강망어업	1	0.9	2	0.4
근해자망	1	0.9	2	0.4
근해형망어업	1	0.9	2	0.4
잠수기어업	14	12.6	29	5.6
연승어업허가	2	1.8	22	4.3
연안복합어업	12	10.8	34	6.6
연안자망, 연안복합	2	1.8	5	1.0
연안자망어업	19	17.1	40	7.8
연안조망어업	3	2.7	10	1.9
연안통발어업	1	0.9	2	0.4
자망어업허가	1	0.9	11	2.1
장망류어업	4	3.6	9	1.8
각망어업	6	5.4	21	4.1
기타(낚시)	13	11.7	82	16.0
기타(어장관리)	3	2.7	74	14.4
마을어업	1	0.9	2	0.4
연근해어획물운반업	7	6.3	115	22.4
수하식양식업	3	2.7	10	1.9
양식업	1	0.9	3	0.6
양식업 지정	2	1.8	4	0.8
-	14	12.6	35	6.8

주 : '-'는 업종 미가입 어선임

(6) 전북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지분어선의 경우 연안복합어업의 비중이 27.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연안자망어업(16.7%), 근해안강망어업(13.0%), 수하식양식업(11.1%), 연근해어획물운반업(11.1%) 등이 각각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지분권자의 분포는 지분어선과는 달리 연근해어획물운반업(26.1%)과 연안복합어업(21.8%)에 전체의 47.9%가 집중되었다.(〈표 3-16〉 참고)

〈표 3-16〉 전북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 계	54	100.0	142	100.0
근해안강망어업	7	13.0	16	11.3
근해연승어업	2	3.7	4	2.8
근해형망어업	1	1.9	2	1.4
실뱀장어안강망어업	1	1.9	2	1.4
연안복합어업	15	27.8	31	21.8
연안선망어업	1	1.9	2	1.4
연안자망어업	9	16.7	18	12.7
연안조망어업	1	1.9	2	1.4
연안통발어업	1	1.9	2	1.4
주목망어업	3	5.6	6	4.2
양식업(바다식)	1	1.9	2	1.4
양식업(수하식)	6	11.1	18	12.7
연근해어획물운반업	6	11.1	37	26.1

(7) 전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전남은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근해어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근해어업에서는 기선권현망어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지분어선 13.4%, 지분권자 비중은 10.7%였다. 연안어업에서는 연안복합어업과 연안자망어업의 비중이 높는데, 지분어선의 경우 각각 15.7%, 10.4%, 지분권자의 비중은 12.5%, 7.6%였다. (〈표 3-17〉 참고)

한편 연근해어획물운반업의 비중도 상당한 편으로 나타났다. 지분어선의 비중은 11.9%, 지분권자의 비중도 28.5%에 달했다.(〈표 3-17〉 참고)

〈표 3-17〉 전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 계	268	100.0	759	100.0
잠수기어업	16	6.0	32	4.2
근해안강망어업	28	10.4	59	7.8
근해연승어업	2	0.7	4	0.5
근해자망어업	10	3.7	22	2.9
근해채낚기어업	2	0.7	4	0.5
근해통발어업	1	0.4	27	3.6
기선권현망어업	36	13.4	81	10.7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5	1.9	10	1.3
대형트롤어업	4	1.5	8	1.1
소형선망어업	2	0.7	6	0.8
근해안강망어업/근해통발어업	1	0.4	2	0.3
근해자망어업/근해안강망어업	1	0.4	2	0.3
근해자망어업/근해연승어업	2	0.7	4	0.5
근해채낚기어업/근해자망어업	1	0.4	2	0.3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연안자망	2	0.7	4	0.5
근해채낚기어업/근해자망어업/근해통발어업	1	0.4	2	0.3
실뱀장어안강망어업	1	0.4	2	0.3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	0.4	2	0.3
연안복합어업	42	15.7	95	12.5
연안자망어업	28	10.4	58	7.6
연안통발어업	6	2.2	15	2.0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	1.1	6	0.8
패류형망어업	1	0.4	2	0.3
각망어업	1	0.4	2	0.3
낭장망	1	0.4	2	0.3
양식업(가두리)	1	0.4	3	0.4
양식업(수하식)	6	2.2	14	1.8
혼합양식어업	1	0.4	2	0.3
연근해어획물운반업	32	11.9	216	28.5
관리선	1	0.4	2	0.3
-	29	10.8	69	9.1

주 : '-'는 업종 미가입 어선임

(8) 경북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경북지역은 연안자망어업에 지분어선과 비준권자가 절반 이상 집중되었다. 지분어선의 경우 연안자망어업의 비중이 53.6%, 지분권자에서는 51.0%를 기록했다.(〈표 3-18〉 참고)

〈표 3-18〉 경북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 계	855	100.0	2017	100.0
근해안강망어업	1	0.1	2	0.1
근해외줄낙시어업	1	0.1	2	0.1
근해자망어업	8	0.9	17	0.8
근해채낚기어업	52	6.1	115	5.7
근해통발어업	25	2.9	58	2.9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0	1.2	21	1.0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2	2.6	67	3.3
연안들망어업	6	0.7	15	0.7
연안복합어업	92	10.8	217	10.8
연안선망어업	13	1.5	26	1.3
연안자망어업	458	53.6	1029	51.0
연안통발어업	62	7.3	128	6.3
각망어업	8	0.9	17	0.8
건망어업	11	1.3	39	1.9
승망류어업	3	0.4	9	0.4
통발어업	1	0.1	3	0.1
대형정치망어업	50	5.8	175	8.7
중형정치망어업	1	0.1	2	0.1
마을어업	6	0.7	12	0.6
협동양식업	1	0.1	3	0.1
양식업(가두리)	1	0.1	2	0.1
양식업(바닥식)	1	0.1	2	0.1
양식업(수하식)	19	2.2	47	2.3
혼합양식업	1	0.1	3	0.1
연근해어획물운반업	1	0.1	3	0.1
기타	1	0.1	3	0.1

(9) 경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경남지역은 근해어업에서는 기선권현망어업, 연안어업에서는 연안복합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선권현망어업의 지분어선 비중은 12.6%, 지분권자 29.1%였으며, 연안복합어업에서는 각각 11.3%, 27.3%로 나타났다.(〈표 3-19〉 참고)

〈표 3-19〉 경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 계	364	100.0	855	100.0
잠수기어업	26	7.1	53	6.2
근해연승어업	7	1.9	14	1.6
근해자망어업	10	2.7	22	2.6
근해장어통발어업	10	2.7	21	2.5
근해채낚기어업	2	0.5	12	1.4
근해통발어업	5	1.4	10	1.2
기선권현망어업	46	12.6	97	11.3
대형선망어업	1	0.3	2	0.2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8	2.2	20	2.3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4	1.1	8	0.9
소형선망어업	6	1.6	12	1.4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8	2.2	18	2.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	0.3	2	0.2
연안복합어업	106	29.1	233	27.3
연안자망어업	6	1.6	12	1.4
연안선망어업	3	0.8	6	0.7
연안자망어업	39	10.7	80	9.4
연안통발어업	2	0.5	4	0.5
연안통발어업	28	7.7	61	7.1
정치망어업	3	0.8	6	0.7
연승, 자망	1	0.3	2	0.2
각망, 자망어업	2	0.5	30	3.5
연근해어획물운반업	9	2.5	61	7.1
어장관리선	17	4.7	44	5.1
-	14	3.8	25	2.9

주 : '-'는 업종 미가입 어선임

(10) 부산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부산지역은 <표 3-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안복합어업의 비중이 지분어선과 지분권자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분어선에서는 31.4%, 지분권자에서는 29.7%였다. 이외에 대형트롤어업과 연안통발어업의 비중도 10%를 상회했다. 대형트롤어업의 경우 지분어선에서는 14.3%, 지분권자는 16.2%였다. 그리고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지분어선 11.4%, 지분권자 10.8%의 비중을 기록했다.

<표 3-20> 부산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계	35	100.0	74	100.0
근해채낚기어업	2	5.7	4	5.4
근해통발어업	2	5.7	4	5.4
대형트롤어업	5	14.3	12	16.2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3	8.6	6	8.1
연근해어획물운반업	2	5.7	6	8.1
연안들망어업	1	2.9	2	2.7
연안복합어업	11	31.4	22	29.7
연안선망어업	2	5.7	4	5.4
연안자망어업	2	5.7	4	5.4
연안통발어업	4	11.4	8	10.8
패류채취어업	1	2.9	2	2.7

(11) 제주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제주의 경우 연안복합어업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근해어업 중 근해연승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연안복합어업의 지분어선 비중은

66.7%, 지분권자는 73.8%에 이르렀으며, 근해연승어업은 각각 15.1%와 11.7%를 기록했다.(〈표 3-21〉 참고)

〈표 3-21〉 제주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단위 : 척, 명, %)

구 분	지분어선	비 중	지분권자	비 중
합 계	423	100.0	1119	100.0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2	0.5	4	0.4
근해자망어업	16	3.8	32	2.9
근해문어단지	1	0.2	3	0.3
근해연승어업	64	15.1	131	11.7
근해채낚기어업	5	1.2	10	0.9
근해연승/근해문어단지	1	0.2	2	0.2
근해자망/근해연승	11	2.6	22	2.0
근해채낚기/근해붕수망	1	0.2	2	0.2
근해채낚기/근해연승	15	3.5	32	2.9
근해채낚기/근해자망	11	2.6	24	2.1
근해채낚기/근해통발	2	0.5	4	0.4
근해연승/근해채낚기/근해자망	5	1.2	11	1.0
연안복합어업	282	66.7	826	73.8
정치망어업	3	0.7	7	0.6
양식업	4	0.9	9	0.8

제3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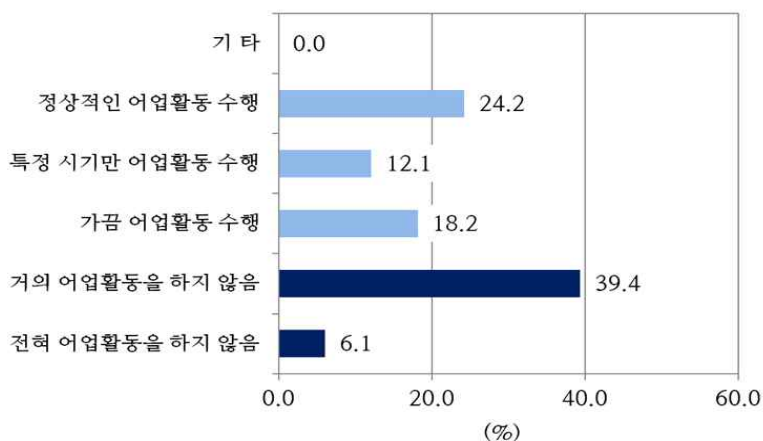
어선 지분 소유자 활동 현황

1.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 활동 및 수협사업 이용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어선 지분 소유자의 실태를 파악했다. 전체 70개 지구별 수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개 조합이 응답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회원조합의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활동, 조합의 사업 이용, 그리고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등이다.

1)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 활동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 활동 빈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지분 소유자가 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6.1%, 가끔 하는 경우는 39.4%로, 어업 활동이 저조한 편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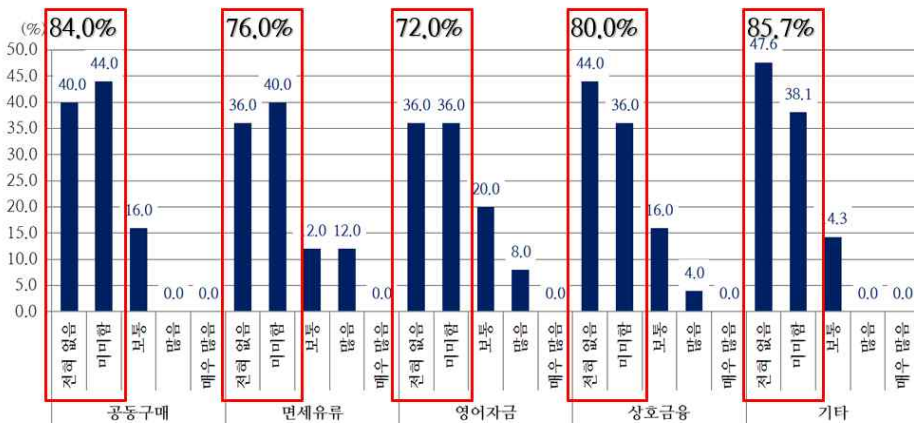
[그림 3-8]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어업활동에 대한 평가

반면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응답은 24.2%였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만 어업 활동을 한다거나 가끔 어업 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각각 12.1%와 18.2%로 나타났다.([그림 3-8] 참조)

2) 조합사업 이용 현황

어선 지분 소유자는 조합사업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지분 소유자의 조합사업 이용 빈도는 낮음(전혀 없음+미미함)의 응답률이 70% 이상이었다. 사업별로는 기타(85.7%), 공동구매(84.0%), 상호금융(80.0%), 영어자금(72%)의 순으로 이용 빈도가 낮았다.([그림 3-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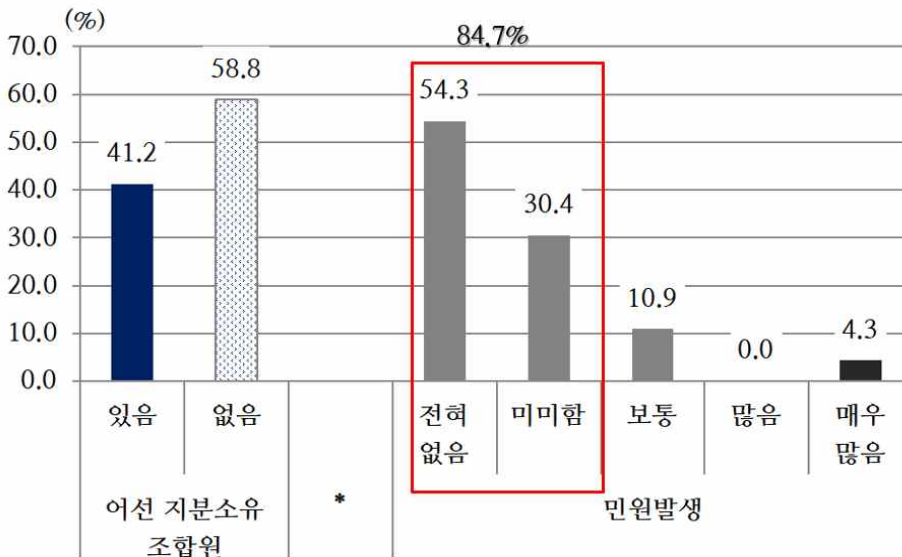
조합사업 이용 빈도 중 ‘전혀 없음’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기타 47.6%, 상호금융 44.0%, 공동구매 40.0% 등으로 40%를 상회했다. 그리고 영어자금 36.6%, 면세유류 36.0%로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그림 3-9] 참조)



[그림 3-9]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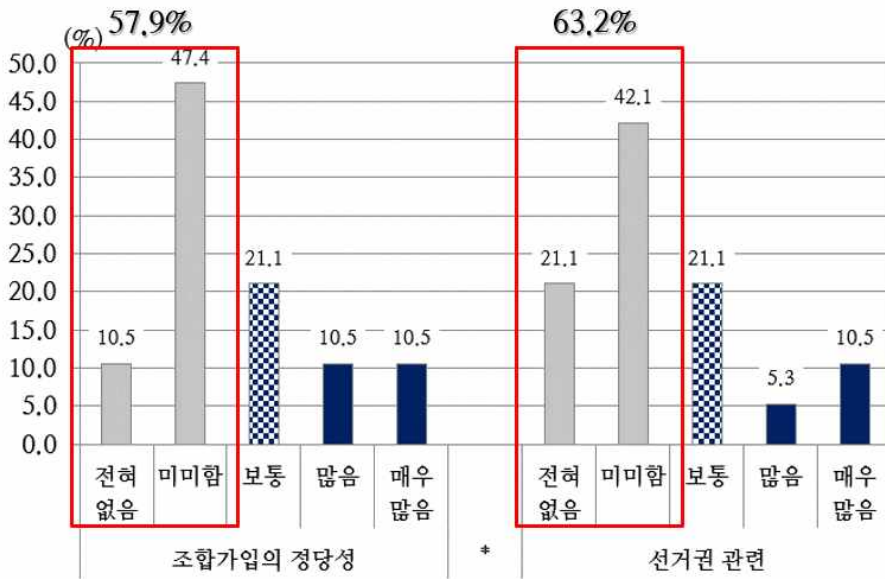
3) 어선 지분 소유자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어선을 지분으로 소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2%의 조합에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과 관련한 민원 발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민원의 발생이 ‘전혀 없음’ 응답이 54.3%, ‘미미함’이 30.4%를 차지했다. 관련 민원 발생이 ‘매우 많음’은 4.3%이며, 해당 회원조합은 경기남부수협과 죽왕수협 2개였다.([그림 3-10] 참조)



[그림 3-10]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 유무 및 관련 민원 발생

민원 내용의 경우 조합 가입의 정당성에서 21.0%, 선거권에서 15.8%가 ‘많음(많음+매우 많음)’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많은 회원조합을 보면, 조합 가입의 정당성은 죽왕수협과 한림수협, 선거권은 고성군수협, 죽왕수협, 경기남부수협에서 많았다.([그림 3-11] 참조)



[그림 3-11] 조합가입 및 선거권 관련 민원 발생 정도

2. 지분 소유 사례

1) 어선 지분 소유 실태

(1) 지역·인원수별 어선 분포

지분권자의 인원수별 어선의 분포는 <표 3-22>와 <표 3-23>에 정리하였다. 지분권자의 수는 2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분포하고 있다.

지분권자 수 2명의 경우 2,241척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3명은 277척, 4명은 88척으로 각각 전체의 10.0%, 3.2%를 차지였다. 이렇듯 지분권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3.9%에 달하고 있다. 한편 1척 당 지분권자 10명 이상의 경우는 40척이었다. 10명인 경우가 10척, 11명은 7

척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 최다 인원수를 보면 인천은 23명, 경기 4명, 강원 10명, 충남은 100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는 11명, 전남 27명, 경남과 경북은 15명, 부산은 4명, 제주는 19명이었다. 지역적으로 경기와 부산의 최다 지분권자 수는 4명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지분 소유가 안정적이다.

〈표 3-22〉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10명 미만)

구분	총계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합계	2,774	2,241	277	88	59	28	15	21	4
인천	149	124	12	2	1	1	1	3	
경기	116	107	7	2					
강원	399	327	43	9	7	4	3	2	1
충남	111	69	12	6	7	6	1	1	
전북	54	44	5		1		1	2	
전남	268	208	25	6	10	3	2	5	2
경북	855	707	85	32	14	5	2	5	1
경남	364	309	34	10	1	2	1	1	
부산	35	33		2					
제주	423	313	54	19	18	7	4	2	

〈표 3-23〉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10명 이상)

구분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9명	20명	23명	27명	38명	100명
합계	10	7	4	3	2	6	2	2	1	1	1	1	1
인천	2		1					1		1			
경기													
강원	3												
충남		4	1				1		1			1	1
전북		1											
전남	2	1		1		1	1				1		
경북				1	1	2							
경남	2			1	1	2							
부산													
제주	1	1	2			1		1					

(2) 톤급·인원수별 어선 분포

톤급별로 지분권자의 인원수 분포를 보면 <표 3-24>에 정리한 것과 같다. 2~3톤급, 50~100톤급의 어선이 지분권자의 인원수 분포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지분권자 수인 100명은 30~50톤급에서 기록했다.

<표 3-24> 지분권자의 톤급·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 분	합계	1톤 미만	1~ 2톤	2~ 3톤	3~ 5톤	5~ 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100톤 이상
합계	2,774	248	551	331	528	139	313	266	147	213	38
2명	2,241	189	474	261	413	121	266	214	123	153	27
3명	277	23	45	36	64	10	28	26	9	27	9
4명	88	9	10	13	23	7	8	6	5	6	1
5명	59	8	11	6	15		4	7	3	5	
6명	28	7	2	6	5		2	1	2	2	1
7명	15	2	2	2	2		2	3	1	1	
8명	21	1	4		2		1	4	1	8	
9명	5		1	1	1					2	
10명	10		1	2	1			2	2	2	
11명	8	4		1	1			1		1	
12명	2	2									
13명	3	1								2	
14명	3		1			1				1	
15명	4	2			1		1				
16명	2			1				1			
17명	1							1			
18명	1						1				
19명	1									1	
20명	1			1							
23명	1									1	
27명	1									1	
38명	1			1							
100명	1								1		

(3) 톤급·인원수별 어선의 지역별 분포

〈표 3-25〉에서 〈표 3-34〉는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인천지역의 경우 대부분 2~3명의 지분권자이며, 1~5톤 미만의 소규모 선박에 지분어선이 비중이 컸다. 지분권자 19명, 23명인 어선은 각각 1척이며 50~100톤급의 규모이다.

〈표 3-25〉 인천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분	합계	1톤 미만	1~ 2톤	2~ 3톤	3~ 5톤	5~ 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100톤 이상
합계	149	5	27	21	34	6	28	8	3	15	2
2명	124	2	25	20	33	6	28	4	1	5	
3명	12	1	2	1				1		5	2
4명	2	1			1						
5명	1									1	
6명	1							1			
7명	1							1			
8명	3								1	2	
10명	2							1	1		
12명	1	1									
19명	1									1	
23명	1									1	

경기지역은 어선의 지분권자가 4명 이하이다. 2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3명인 경우는 7척, 4명인 경우도 2척에 불과하다. 톤급별로는 2톤 미만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3~5톤의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가장 규모가 큰 지분어선은 10~30톤급의 1척이다.

〈표 3-26〉 경기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 분	합 계	1톤 미만	1~2톤	2~3톤	3~5톤	5~7톤	7~10톤	10~30톤
합계	116	39	26	7	24	5	14	1
2명	107	36	24	5	23	5	13	1
3명	7	3	2	1	1			
4명	2			1			1	

강원지역은 지분권자가 10명이 최다이다. 2~3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10척 이하이다. 톤급별로는 1~2톤급이 106척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2~3톤급과 3~5톤급이 80척을 상회했다. 최다 지분권자인 10명인 경우는 총 3척으로 1~2톤급, 2~3톤급, 3~5톤급이 각각 1척씩이다.

〈표 3-27〉 강원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분	합계	1톤 미만	1~2톤	2~3톤	3~5톤	5~7톤	7~10톤	10~30톤	30~50톤	50~100톤
합계	399	19	106	85	81	31	33	16	10	18
2명	327	15	95	68	64	29	24	12	9	11
3명	43	3	6	9	7	2	7	1	1	7
4명	9		2	2	4		1			
5명	7			1	2		1	3		
6명	4	1		2	1					
7명	3		1	1	1					
8명	2		1		1					
9명	1			1						
10명	3		1	1	1					

충남지역은 최다 지분권자 수를 보유한 지역이다. 1척당 지분권자의 수가 100명인 어선이 1척 있다. 이 어선의 규모는 30~50톤급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분권자의 수가 2~3명이 대부분이며, 톤급별로는 7~10톤급이 가장 많아 여타 지역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3-28〉 충남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분	합계	1톤 미만	1~2톤	2~3톤	3~5톤	5~7톤	7~10톤	10~30톤	30~50톤	50~100톤
합계	111	31	13	15	12	4	24	7	3	2
2명	69	10	9	6	11	2	22	5	2	2
3명	12	1	4	3		1	1	2		
4명	6	1		2	1	1	1			
5명	7	6		1						
6명	6	6								
7명	1	1								
8명	1	1								
11명	4	4								
12명	1	1								
16명	1			1						
20명	1			1						
38명	1			1						
100명	1								1	

전북지역의 지분권자 수는 11명이 최다이다. 이 지역 역시 2~3명의 빈도가 가장 높으며, 톤급별로는 1~2톤급이 가장 많다. 10~30톤급에서는 지분권자 수 7명, 8명, 11명인 경우가 각각 1척씩 분포되어 있다.

〈표 3-29〉 전북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분	합계	1톤 미만	1~2톤	2~3톤	3~5톤	5~7톤	7~10톤	10~30톤	30~50톤	50~100톤
합계	54	9	14	6	2	2	4	7	2	8
2명	44	9	12	6	2	2	4	4		5
3명	5		2						1	2
5명	1								1	
7명	1							1		
8명	2							1		1
11명	1							1		

어선 수 최다 지역인 전남은 지분권자의 최대 수는 27명이다. 이 어선은

50~100톤급이며, 이 톤급에서 지분권자 수 10명 이상인 경우는 총 4척이다. 이 지역 역시 지분권자의 수가 2~3명에 집중된 가운데, 5명인 경우도 10척으로 두드러진다. 톤급별로는 50~100톤급이 52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1~2톤급, 10~30톤급은 40척 이상이었다. 10~100톤급 어선에서 지분권자의 수가 많다는 특징을 보였다.

〈표 3-30〉 전남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분	합계	1톤 미만	1~ 2톤	2~ 3톤	3~ 5톤	5~ 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100톤 이상
합계	268	10	41	18	24	6	29	46	27	52	15
2명	208	9	33	17	19	6	29	29	16	37	13
3명	25	1	4	1	3			7	4	3	2
4명	6		3					1	1	1	
5명	10		1		2			3	2	2	
6명	3								2	1	
7명	2							1	1		
8명	5							3		2	
9명	2									2	
10명	2								1	1	
11명	1									1	
13명	1									1	
16명	1							1			
17명	1							1			
27명	1									1	

경북지역은 지분어선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분권자 수 2명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3~5명인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톤급별로는 1~2톤급의 비중이 가장 높다. 3~5톤급, 2~3톤급도 100척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취다 지분권자의 수는 15명으로 3~5톤급, 7~10톤급에 1척씩 분포되어 있다.

〈표 3-31〉 경북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분	합계	1톤 미만	1~ 2톤	2~ 3톤	3~ 5톤	5~ 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100톤 이상
합계	855	87	206	118	163	44	91	76	28	41	1
2명	707	76	181	98	132	34	72	62	25	27	
3명	85	7	12	11	22	5	11	8	1	7	1
4명	32	1	3	5	5	4	5	5	2	2	
5명	14	1	5	2	2		1	1		2	
6명	5		1	2	1					1	
7명	2	1	1								
8명	5		2				1			2	
9명	1		1								
13명	1	1									
14명	1					1					
15명	2				1		1				

경남지역에는 총 364척의 지분어선이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어선의 지분권자 2명이었으며, 3명인 경우도 34척, 10척이었다. 톤급별로는 1~2톤이 83척으로 가장 많았고, 3~5톤급 67척, 50~100톤급 55척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최다 지분권자의 수는 15명으로 1톤 미만급에 2척이 이에 속한다.

〈표 3-32〉 경남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분	합계	1톤 미만	1~ 2톤	2~ 3톤	3~ 5톤	5~ 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100톤 이상
합계	364	36	83	26	67	5	22	42	14	55	14
2명	309	25	75	23	56	4	21	37	14	45	9
3명	34	4	8	3	6	1	1	4		3	4
4명	10	4			4					2	
5명	1	1									
6명	2				1						1
7명	1									1	
8명	1									1	
10명	2							1		1	
13명	1									1	
14명	1									1	
15명	2	2									

부산지역은 경기지역과 함께 최다 지분권자의 수가 4명이다. 이 중 대부분이 2명인 경우이고, 4명인 경우는 2척에 불과했다. 톤급별 분포도 다양하다. 1톤 미만급, 5~7톤급, 7~10톤급에는 지분어선이 없다.

〈표 3-33〉 부산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분	합계	1톤 미만	1~2톤	2~3톤	3~5톤	5~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100톤 이상
합계	35		7	1	10			3	3	5	6
2명	33		7	1	10			3	2	5	5
3명											
4명	2								1		1

제주는 총 423척의 지분어선이 존재한다. 이 중 313척은 지분권자가 2명이며, 3명인 경우는 54척, 4명과 5명인 경우는 19척과 18척이었다. 나머지 인원수의 경우는 10척 미만이었다. 톤급별로는 3~5톤급이 111척으로 가장 많았고, 7~10톤급과 10~30톤급은 60척을 상회했다.

제주지역의 최다 지분권자는 19명이다. 7~10톤급 어선이 이에 해당한다. 지분권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는 1~2톤급에서 1척, 2~3톤급 2척, 3~5톤급 2척, 7~10톤급 1척이었다.

〈표 3-34〉 제주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구분	합계	1톤 미만	1~2톤	2~3톤	3~5톤	5~7톤	7~ 10톤	10~ 30톤	30~ 50톤	50~ 100톤
합계	423	12	28	34	111	36	68	60	57	17
2명	313	7	13	17	63	33	53	57	54	16
3명	54	3	5	7	25	1	8	3	2	
4명	19	2	2	3	8	2			1	1
5명	18		5	2	9		2			
6명	7		1	2	2		2			
7명	4			1	1		2			
8명	2		1		1					
10명	1				1					
11명	1			1						
12명	2			1	1					
15명	1		1							
19명	1						1			

2) 지분권자의 인원수 5명 이상 사례

지분권자의 인원수 5명 이상인 사례를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지분권자의 기준 수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1) 지분권자 5명 이상 ~ 10명 미만 사례

인천지역에는 6척이 지분권자 5명 이상 10명 미만이다. 이 중 5척은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이었으며, 1척은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된다. 근해자망어선의 경우 지분권자는 8명이었다. 8명의 지분권을 살펴보면 1명이 93%, 나머지 7명이 각각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어선의 규모는 99톤급이다.

강원의 경우 17척이 분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양양군이 10척으로 가장

많았고, 삼척시 4척, 강릉시와 고성군이 각각 2척과 1척이었다. 업종은 연안자망어업이 8척으로 가장 많았다. 근해어선에는 중형정치망어선 2척, 대형정치망어업 1척 등이다. 어선 규모는 중형정치망어선이 각각 22톤급, 13톤급이었고, 대형정치망어선은 20톤급이다. 마을어업에 사용되는 1.83톤급 어선은 지분권자가 8명으로, 지분권은 1명이 30%, 나머지 7명이 10%씩을 가지고 있다. 이외 연안선망어선 1척(3.04톤급, 지분권자 8명), 연안통발어선 1척(3.4톤급, 지분권자 5명), 패류형망어선 1척(2.72톤급, 지분권자 9명) 등이다. 이외에 건망어업과 호망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이 각각 1척씩이다.

충남지역의 지분권자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어선은 15척이다. 보령시의 연안복합어업 2척과 태안군의 어선을 을 제외한 나머지는 낚시어선으로 아산시 소속이다. 이들 낚시어선들은 내수면어업계원들이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보령시의 연안복합어업은 1톤 미만 어선이었으며, 지분권자 수는 각각 6명과 5명이며 지분권자간 지분율은 동일하다.

전북은 4척의 지분권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이다. 이 중 3척은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된다. 나머지 1척은 부안군 소속으로 수하식 양식업에 사용되는 16톤급 어선이다. 지분권자는 총 7명인데, 대항,돈지,문포,백련,장신,조포,창북 어촌계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전남에는 22척의 지분권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이다. 이 중 17척이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고 있다. 연안어선은 3척으로 완도군의 1.64톤급, 신안군의 4.1톤급 연안복합어선과 3톤급 연안통발어선으로 지분권자의 수는 모두 5명이다. 근해어선은 여수시의 38톤급 기선권현망어선으로 지분권자 수는 5명이다.

경북에는 27척의 지분권자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이다. 시군별로는 포항시 10척 울릉군 8척, 울진군과 경주시가 각각 4척, 영덕군 1척이다.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9척으로 근해통발어업 1척, 대형정치망어업 4척

나머지 4척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18척은 연안어선이다. 건망어업 3척 연안복합어업 4척, 11척은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된다. 지분권자 간 지분율은 대부분 동일했으며, 울릉군의 4.04톤급 연안자망어선만이 6명의 지분권자 중 1명은 60%, 나머지 5명은 10%로 지분권에 차이를 두었다.

경남은 5척의 어선이 지분권자의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이다. 이 중 2척은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된다. 나머지 3척은 241톤급 1척, 4.88톤급과 0.93톤급 연안복합어선이다. 이들 세척 모두 1명의 지분율이 두드러지게 높고 나머지는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는 31척이 지분권자의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에 해당한다. 이들 지분어선은 모두 연안복합어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군별로는 제주시 22척, 서귀포시 9척이다.

한편 부산과 경기지역에는 지분권자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어선은 없다.

(2) 지분권자 10명 이상 사례

인천은 5척으로 각 어선의 지분권자 수는 10명이 2척, 12명, 19명, 23명이 각각 1척이다. 지분권자 10명인 두 어선은 인천의 중구와 남동구 선적이며 19명, 23명인 어선은 옹진군 선적으로 이들 4척의 업종은 어획물운반업이다. 나머지 지분권자 12명의 어선은 강화군 선적으로 마을어장에서 사용하는 선박이며, 12명이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지분권자 10명인 어선이 3척이다. 3척 모두 양양군 선적으로 1.99톤 건망어선 1척, 연안자망어선 4.21톤, 2.08톤 각 1척씩이다. 이들 어선의 최대 지분율은 91%, 55%, 19%이다.

충남지역의 경우 지분권자 10명 이상인 어선은 총 9척이다. 이 중 전국 최다지분권자 수인 100명인 어선이 1척이 포함된다. 이 선박은 39톤급으

로 서산시 선적 어획물운반어선이다. 보령시 선적 4척은 자망어업과 연승어업 각 2척인데, 보령댐어업계 11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아산시 선적 4척도 어장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어선으로 어업계원별 동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지분권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사례는 군산시 선적 1척으로,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29톤 선박이다. 지분소유자는 11명이며, 최대지분자가 89%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1~2%씩으로 지분이 배분되어 있다.

전남에는 총 7척이 지분권자의 수가 10명 이상이었으며, 1척은 근해통발어업, 나머지 6척은 모두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이다. 근해통발어선은 79톤급으로 시군 선적은 목포시, 지분권자 수는 27명이었으며, 지분은 79톤 중 지분 톤으로 계산한다.¹⁵⁾ 6척의 어획물운반어선 중 4척은 신안군의 선적으로, 지분권자의 수는 46톤과 61톤 어선이 각각 10명, 75톤 어선이 11명, 77톤 어선은 13명이었다. 나머지 2척은 진도군의 20톤급이며, 지분권자의 수는 29톤 어선이 17명, 77톤 어선은 23명이었다.

경북지역에는 지분권자 10명 이상인 어선은 총 4척으로 포항시 선적 3척은 대형정치망어업, 경주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1척이다. 먼저 포항시 선적 어선의 규모는 4.88톤, 6.40톤, 7.93톤으로 지분권자 수는 각각 15명, 14명, 15명이다. 경주시 선적의 어선은 0.44톤의 소규모 선박이며, 지분권자 수는 13명이다.

경남의 지분권자 10명 이상 어선은 4척으로, 이 중 2척은 내수면어업인 각망/자망어업이 2척, 나머지 2척은 어획물운반어선이었다.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2척의 선적지는 거창군이며, 어선규모는 0.55톤, 0.71톤, 지분권자 수는 각각 15명씩이었다. 어획물운반어선 2척의 선적지는 통영시이며, 어선 규모는 84톤, 93톤, 지분권자 수는 각각 14명, 13명이었다.

15) 예시 : 이 아무개 지분 30/790

제주도에는 제주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6척이 지분권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어선이었다. 1.99톤급 선박의 지분권자 수는 15명, 2.99톤은 11명으로, 이들의 지분권자는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97톤급 어선의 지분권자 수는 12명으로, 지분은 40% 1명, 10% 1명, 나머지 10명은 모두 5%씩을 나눠가지고 있다. 4.03톤급 어선의 지분권자는 10명으로, 지분율은 50% 1명, 29% 1명, 나머지는 2% 또는 3%이다. 4.13톤급 어선도 지분권자 수는 12명인데, 지분은 2명이 25%씩을 소유하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5%씩을 나눠가지고 있다. 9.77톤의 선박의 경우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지분권자인 19명 중 1명이 82%의 지분을, 나머지 18명이 1%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부산과 경기지역에는 지분권자 수가 10명 이상인 어선은 없다.

3) 산림조합 사례

산림조합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표적인 지분 쪼개기에 의한 부정적 사례이다. 2019년 이후 언론 보도 및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산지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소유주를 늘리고, 늘어난 소유주를 조합에 가입시킴으로써 조합장 선거에 악용된 것이다.

2019년 보도된 사례의 경우 경남의 야산 두 곳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 곳은 야산 600㎡에 소유주 41명, 다른 한 곳은 700㎡에 소유주 43명이었다. 사건이 보도되기 2년 전인 2017. 2월부터 석 달 동안 16㎡씩 분할 매매했다.(〈표 3-35〉 참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경남 양산시 소재 약 1,470평의 산지에 소유주가 826명으로 1인당 1.8평씩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제군 소재 8,000평의 산지를 378명이 공유함으로써 1인당 21.3평씩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표 3-35〉 참고)

〈표 3-35〉 일명 ‘산 쪼개기’ 사례

구 분	사 례	비 고
2019.2 KBS 보도	경남의 야산 600㎡ 소유주 41명 경남의 야산 700㎡ 소유주 43명	2017. 2월부터 석 달 동안 16㎡씩 분할 매매
2020.10.15. 최인호의원 국감 보도자료	경남 양산시 소재 약 1,470평의 산지 소유주 826명 일명 ‘산 쪼개기’ 전국 56곳 산주 조합원 수 28만 1,000명(2018년 말) → 28만 4,000명(2019년 말)	2019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2020국감 10월 15일 오늘의 정책질의 자료	양산시 소재 1,470평의 산지 826명이 공유 인제군 소재 8,000평의 산지 378명이 공유	1인당 1.8평 소유 1인당 21.3평 소유

제 4 절

시사점

이 장에서는 전국의 어선을 대상으로 소유구조를 분석했다. 어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주 대상으로 지분 소유자의 수, 어선 규모(톤급), 허가의 종류(업종) 등을 기준으로 공동 소유 어선(지분어선)의 분포 비중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분 소유자 5명 이상의 어선에 대해 지분율, 지분 소유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파악한 특징 및 시사점은 다음의 지분어선 분포, 지분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지분어선의 분포

1) 어선 1척 당 소유권자 수 1.07명에 불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어선은 총 59,453척이었으며, 이 중 지분어선은 2,774척으로 4.7%를 차지했다. 2,777척의 지분권자는 7,085명으로, 지분 어선 1척당 지분권자 수는 2.55명이었다. 분석 대상 어선 59,453척을 기준으로 보면 지분을 포함해 어선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총 63,764명이다. 따라서 어선 1척 당 소유권자의 수는 1.07명에 불과하다.

2) 어획물운반어선 고려 시 어선 1척 당 소유권자 수 1.06명으로 감소

어획물운반업은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실제 어업인이 조업한 결과물을 수집해 위판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이에 어획물운반어선은 기존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투자 및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회원조합의 입장에서는 어획물운반업자를 조합 가입의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획물운반업은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분을 통해 어선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어선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분어선 중 어획물운반업의 수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표 3-36>은 지역별 어획물운반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어획물운반선은 전국 총 250척이 있으며, 이 중 지분을 통해 공동소유인 어선은 89척이다. 이 89척을 소유한 지분권자는 586명이다.

〈표 3-36〉 지역별 어획물운반선 현황

(단위 : 척, 명)

구 분	어획물운반선			구 분	어획물운반선		
	총 수	지분어선	지분권자		총 수	지분어선	지분권자
합계	250	89	586	전남	108	32	216
인천	26	26	136	경북	2	1	3
경기	27	6	12	경남	32	9	61
충남	23	7	115	부산	2	2	6
전북	30	6	37	-	-	-	-

주 1) '총 수'는 어획물운반선의 소유주 1명 및 복수인 어선의 합을 의미

2) 강원과 제주는 어획물운반선 없음

따라서 지분을 통해 어선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분어선과 지분권자 수를 재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분어선은 2,777척에서 89척이 줄어든 2,688척이다. 전국 어선 수 대비 4.5%를 차지한다. 지분권자의 수도 7,085명에서 6,499명으로 감소한다. 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 지분어선 1척당 지분권자 수는 2.42명, 어선 1척당 소유권자의 수는 1.06명이다.

3) 5인 미만 지분권자 대부분 차지

어선을 지분 분할을 통해 소유하는 것은 어선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 어업경영의 승계, 공동체 공동사업 등 여러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지분권자의 수는 2~3명의 소수에서 10여 명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지분권자의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2명이 지분어선의 80.8%, 3명은 10.0%, 4명일 경우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분권자 5명 미만 지분어선의 비중은 93.9%에 이른다.

한편 최대 지분권자의 수인 100명을 기록한 충남의 지분어선은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회원조합에서는 이들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으로 많은 지분권자 수인 38명의 지분어선은 충남의 2.01톤 어선으로 어장관리선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촌계 등에서 어장관리 또는 공동사업을 위해 어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 ‘지분조개기’ 상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4) 지분어선의 상대적 동해안 지역 집중 분포

지역별로 지분어선의 분포를 보면 경북, 강원 등의 동해안과 제주의 비중이 높았다. 실제 어선의 수는 전남, 경남 등에 73.4%가 집중되어 있지만 지분어선은 경북·강원·제주에 60.4%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어선 소유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들 지역이 여타지역에 비해 어업경영의 규모는 영세한 반면 어선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어선구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과 추론은 향후 정부 또는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강원, 경북, 제주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및 어촌민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참

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 또는 각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업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5) 민원 발생 미미

사회의 발전과 함께 어촌 역시 과거와 달리 많은 이해관계자가 그 구성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지역 또는 업종별수협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들은 각자의 어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종사업종, 경영 규모, 조업 형태, 활동 시기, 활동 구역 등이 매우 상이하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합원 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어선의 지분조개기는 조합의 선거, 운영 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민원의 발생 정도에 따라 어선의 지분조개기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어선 지분 소유자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경우 절반 이상(58.8%)의 조합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관련 민원도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응답이 84.7%에 달했다. 또한 조합 가입의 정당성, 선거권과 관련한 민원 역시 절반 이상의 조합에서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어선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의 선거 및 운영에 심각하게 관여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즉, 어선의 지분 소유가 어업경영 상의 이유 등에 의한 것으로 납득 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2. 어선 지분구조

어선의 지분구조는 동일 지분 분배, 소수 집중, 1인 집중 등 다양했다. 즉, 어선의 지분비율로 보면 첫째, 지분소유자가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둘째, 일부 지분 소유자의 비율이 여타 소유자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셋째, 1명의 지분 소유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율을 소유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지분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몇몇 사례를 통해 일부 원인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장관리에 사용되는 어선이다. 마을어장을 포함한 어촌계의 각종 어장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어선의 경우 동일 지분 소유가 흔한 형태이다. 어촌계원들이 자금을 공동부담하여 어선을 구매하는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어획물운반선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도 언급한 사례처럼 3~4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물론 어선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자들이 어선 구입 자금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도 동일한 지분 비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공동체 또는 어업인들의 공동사업을 위해 어선의 지분을 동일 비율로 소유하는 경우는 어업경영 및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어촌계 간 공동사업단의 운영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제 4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제 1 절 조사 개요

제 2 절 조사 결과

제 3 절 시사점



제 1 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어선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의 정당성,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건전한 어업경영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어선의 지분 소유를 통해 조합원이 되는 것에 따른 부작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회원조합, 어업인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 지분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어업인 및 회원조합의 인식, 제도 개선(안) 적용 및 효과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을 어업인과 회원조합으로 구분하여, 조합원 자격 제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조합원 관리실태 등도 함께 파악했다.

2. 조사 설계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첫째, 어선의 지분 소유 및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조사, 둘째,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조사이다. <표 4-1>에는 조사 설계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표본조사로 진행된 어선의 지분 소유 및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조사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응답수는 280명이며, 주요 조사 내용

은 일반사항을 포함한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인식,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조합원 자격 규정 적용에 대한 인식 등이다.

반면 전수조사로 실시된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조사는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수는 52개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사항을 포함한 조합원 관리 실태, 어선 지분 소유자 현황,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조합원 자격 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 등이다.

조사 기간은 두 조사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2022.2.11~24일의 2주일 동안 조사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했으며, 수협이 계통조직을 활용하여 설문지의 작성과 회수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표 4-1〉 조사 설계

구 분	어선의 지분 소유 및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조사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조사
대 상	어업인	회원조합
조사 기간	2022. 2. 11~24(2주)	
조사 수단 및 방법	표본조사	전수조사
	조직을 통한 자계식 온라인 조사(구조화된 설문지로 수협의 계통조직을 활용하여 조사 실시)	
응답수	28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하 $\pm 5.86\%$)	52개(응답률 : 74.3%)
조사 내용	I. 일반사항 II.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인식 III.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IV. 조합원 자격 규정 적용에 대한 인식	I. 일반사항 II. 조합원 관리 실태 III. 어선 지분 소유자 현황 IV.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V. 조합원 자격 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

3. 조사 항목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는 두 가지로, 조사대상이 어업인과 회원조합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설문 항목을 설정하는 데에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는데, <표 4-2>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 내용이 구성되었다.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공통된 질문은 어선 지분 소유자 현황,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조합원 자격 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이다.

여기서는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일반사항의 경우 지역, 위판액 및 자산규모, 조합원(규모 및 종사업종), 어선 현황, 조합사업 이용 빈도로 구성했다. 조합원 관리 실태는 조합원 관리 별도 규정 및 조합원 가입 별도 제한 유무, 어업인 확인 서류 및 행정절차 유무, 조합원의 어업 활동 확인 여부로 구성하여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선 2장에서 일부 활용하였다.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공통 질문인 어선 지분 소유자 현황에서는 어선 지분 소유자 유무, 민원 발생 여부 및 내용, 어업인으로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인식,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 활동 평가, 어선 지분 소유자의 조합원 가입에 대한 인식,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 활동 증명 필요성을 조사한다.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항목은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 조합가입, 선거권,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조합원 가입 자격 제한 방법, 신규 조합원 또는 어선 지분 소유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 선거권 제한 기간 및 인식, 신규 조합원 또는 어선 지분 소유 신규 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 자격 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의 세 가지 설문 항목으로 구성했다. 규정 개정에 대한 인식, 개정 규정의 적용 방식, 기대효과가 그것이다.

〈표 4-2〉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세부 조사 내용

구 분	세부 사항	비 고
I. 일반사항	- 지역 - 위판액 및 자산규모 - 조합원(규모 및 종사업종) - 어선 현황 - 조합사업 이용 빈도	
II. 조합원 관리 실태	- 조합원 관리 별도 규정 및 조합원 가입 별도 제한 여부 - 어업인 확인 서류 및 - 행정절차 유무 - 조합원의 어업 활동 확인 여부	
III. 어선 지분 소유자 현황	- 어선 지분 소유자 유무 - 민원 발생 여부 및 내용 - 어업인으로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인식 -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 - 활동 평가 - 어선 지분 소유자의 조합원 가입에 대한 인식 -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 활동 증명 필요성	회원조합 및 어업인 대상 공통 질문
IV.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 - 조합가입, 선거권,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 조합원 가입 자격 제한 방법 - 신규 조합원 또는 어선 - 지분 소유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 - 선거권 제한 기간 및 인식 - 신규 조합원 또는 어선 지분 소유 신규 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한	
V. 조합원 자격 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	- 규정 개정에 대한 인식 - 개정 규정의 적용 방식 - 기대효과	

제2절

조사 결과

1. 회원조합의 조합원 관리 실태

1) 응답 현황

전체 70개 지구별 수협 중 52개 조합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74.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1.2%, 경남 19.2%, 강원과 충남이 각각 11.5%씩 차지했다. 응답 조합의 지역별 분포는 <표 4-3>에 정리한 것과 같다.

〈표 4-3〉 응답 조합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응답수	비 중	구 분	응답수	비 중
합 계	52	100.0	경 북	5	9.6
강 원	6	11.5	경 남	10	19.2
경 인	4	7.7	부 산	1	1.9
충 남	6	11.5	울 산	1	1.9
전 북	3	5.8	제주도	5	9.6
전 남	11	21.2	-	-	-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응답조합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조합원 수 1,000명 이하 30.8%, 1,001~2천명 이하가 25.0% 나타났다. 조합원 수가 2,000명이 되지 않는 조합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표 4-4〉 응답 조합의 조합원 수별 분포

(단위 : 개, %)

구 분	합 계	1,000명 이하	1,001~ 2000명	2,001~ 3000명	3,001~ 4000명	4,001~ 5000명	5,001 명 이상
조합 수	52	16	13	10	6	4	3
비 중	100.0	30.8	25.0	19.2	11.5	7.7	5.8

전국의 위판실적 대비 응답 조합 비중은 〈표 4-5〉와 같다. 응답 조합의 위판실적은 물량 대비 66.4%, 금액 대비 63.9%를 차지했다.

〈표 4-5〉 응답 조합의 위판실적

(단위 : 만 톤, 억 원, %)

구 분	전 국	응답 조합	비 중
위판물량	153.4	101.9	66.4
위판금액	43,790	28,000	63.9

- 주 1. 전국 위판실적은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부산공동어시장 등의 실적을 합한 것임
 2. 응답 조합은 위판실적이 있는 48개 조합임

한편 위판실적별로는 500~1,000억 원 미만인 13개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27.1% 차지했다. 다음은 100~300억 원 미만, 300~500억 원 미만이 10개씩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20.8%였다.(〈표 4-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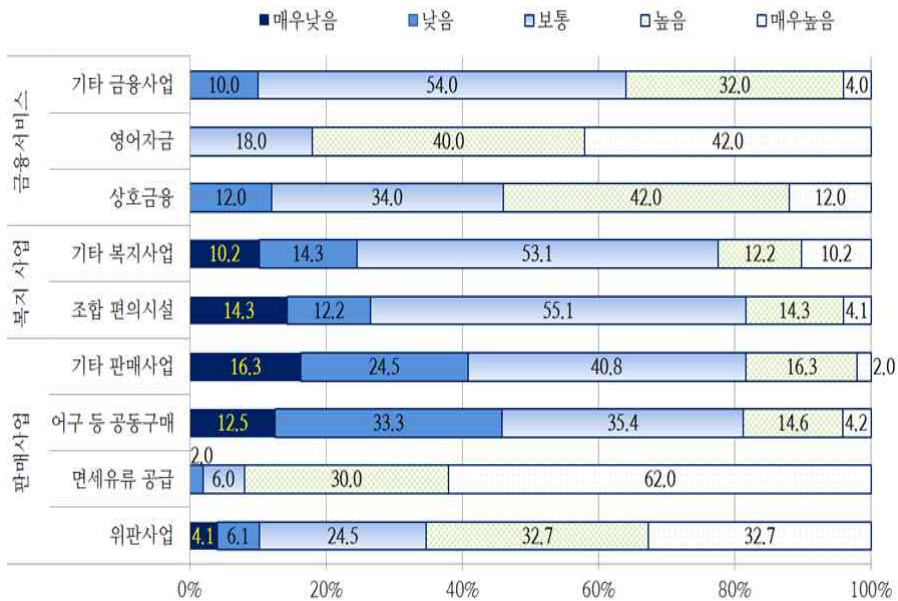
〈표 4-6〉 응답 조합의 위판 실적별 분포

(단위 : 개, %)

구 분	합 계	100억 원 미만	100~ 300억 원 미만	300~ 500억 원 미만	500~ 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조합 수	48	7	10	10	13	8
비중	100.0	14.6	20.8	20.8	27.1	16.7

주 : 응답 조합은 위판실적이 있는 48개 조합임

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도는 사업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면세유류 공급사업은 이용도 높음(높음+매우 높음)에 대한 응답이 92.0%로, 개별 사업 중 가장 이용도가 높았다. 다음은 영어자금 82.0%, 위판사업 65.4%, 상호금융 54.0% 등의 순으로 사업 이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복지사업(조합 편의시설, 기타 복지사업)과 판매사업 중 어구 등 공동구매, 기타 판매사업은 낮음(낮음+매우 낮음)이 높음보다 더 많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이들 사업은 이용도가 ‘매우 낮음’의 응답률이 10%를 상회한다.([그림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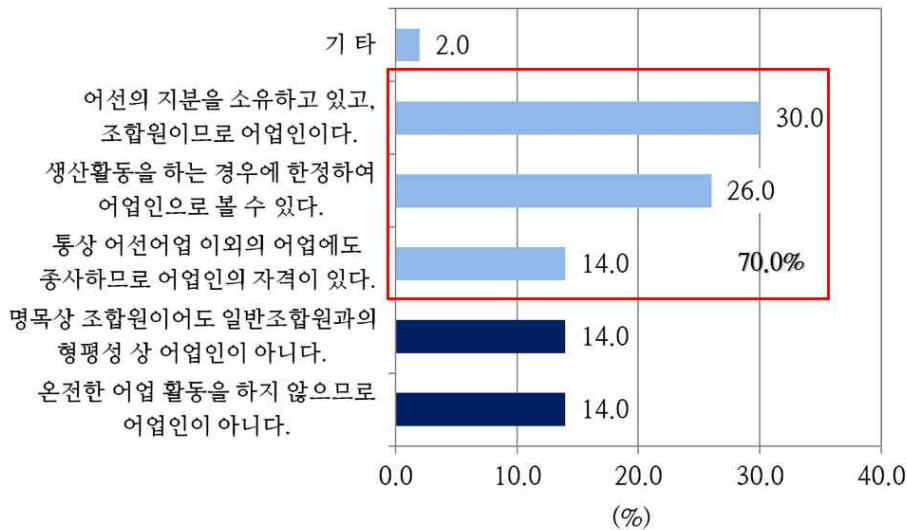


[그림 4-1] 조합원의 조합사업별 이용 현황

2)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인식

어선 지분 소유자를 ‘어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은 70.0%로 높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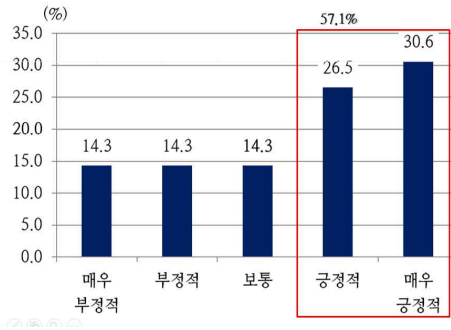
나타났다. 반면 ‘명목상 조합원이어도 일반조합원과의 형평성 상 어업인이 아니다’, ‘온전한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어업인이 아니라’라는 부정적 의견은 각각 14.0%씩이었다.([그림 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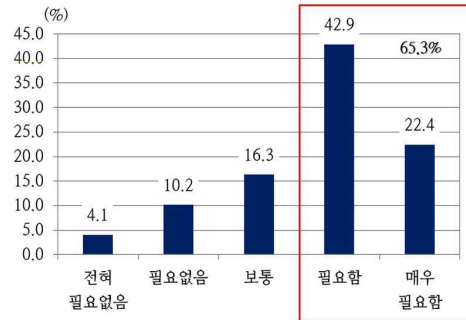
[그림 4-2]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에 대한 ‘어업인’ 인정

[그림 4-3]은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대한 인식 및 어업활동 증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도식한 것이다. 어선 지분 소유자의 조합 가입에 대한 인식도 전체의 57.1%가 긍정적이었는데, 긍정적 26.5%, 매우 긍정적 30.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28.6%로 나타났는데, 매우 부정적 14.3%, 부정적 14.3% 등이었다. 한편 어업활동 증명은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의 응답률이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반면 14.3%는 어업활동 증명이 ‘전혀 필요 없음’ 또는 ‘필요 없음’으로 응답했다.

-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대한 인식 -



-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어업활동 증명 필요성 -



[그림 4-3]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대한 인식 및 어업활동 증명의 필요성

3)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인식

〈표 4-7〉은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여준다.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긍정적 + 매우 긍정적) 35.3%, 부정적(부정적 + 매우 부정적) 27.4%, 보통은 37.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은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7〉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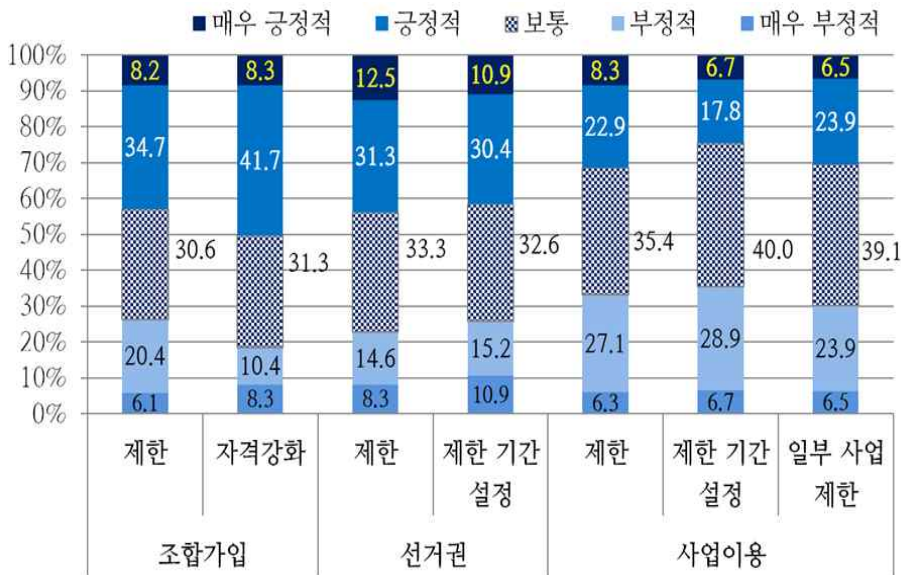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합 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응답률	100.0	7.8%	19.6%	37.3	25.5	9.8

조합원의 가입 자격,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조합사업 이용 제한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해 긍정적(긍정적 +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2.9%로 부정적(부정적 + 매우 부정적) 응답 26.5%보다 높았다. 조합 가입에 대한 자격 강화는 긍정적

(긍정적 +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0.0%였다.([그림 4-4] 참조)

조합원의 권리인 선거권과 조합의 사업이용에 대해 긍정적(긍정적 +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3.8%, 31.2%로 나타났다. 선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조합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또는 무관심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업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기간을 설정한다든지 일부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었다.([그림 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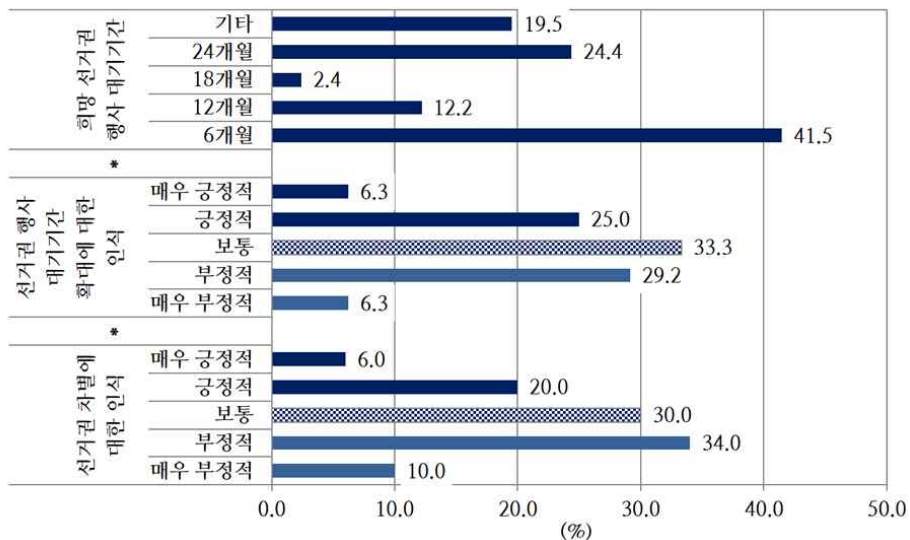
[그림 4-4]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자격 제한 방향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선의 톤수 또는 척당 가입 가능한 조합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표 4-8> 1척 또는 톤수 별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긍정적+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6.0%, 부정적(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0%로 나타났다.

〈표 4-8〉 1척 또는 톤수별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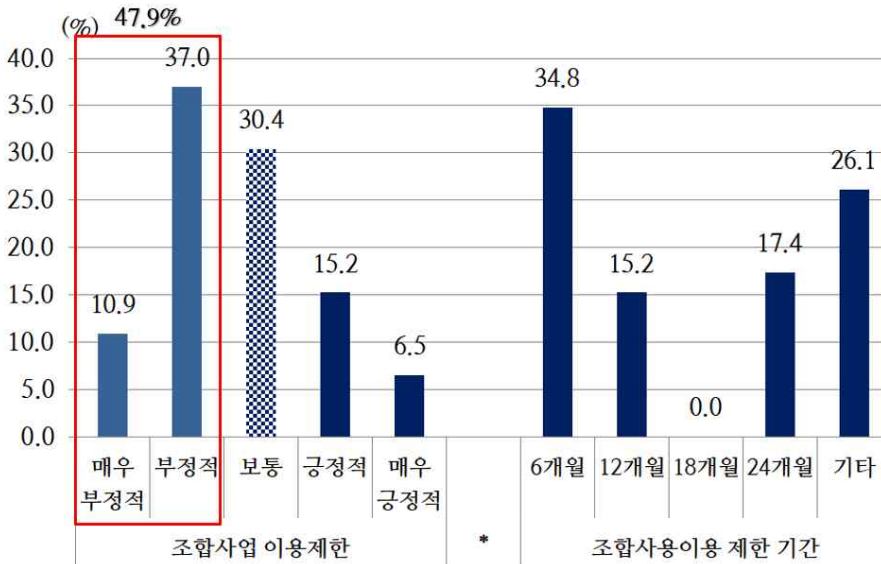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합 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응답률	100.0	8.0	20.0	26.0	38.0	8.0

선거권 차별에 대해 전체의 44%가 부정적(부정적+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긍정적+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6.0%, 부정적(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4.0%였다. 선거권 행사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은 31.3%,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은 35.5%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편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은 가입 6개월 후가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 선거권 제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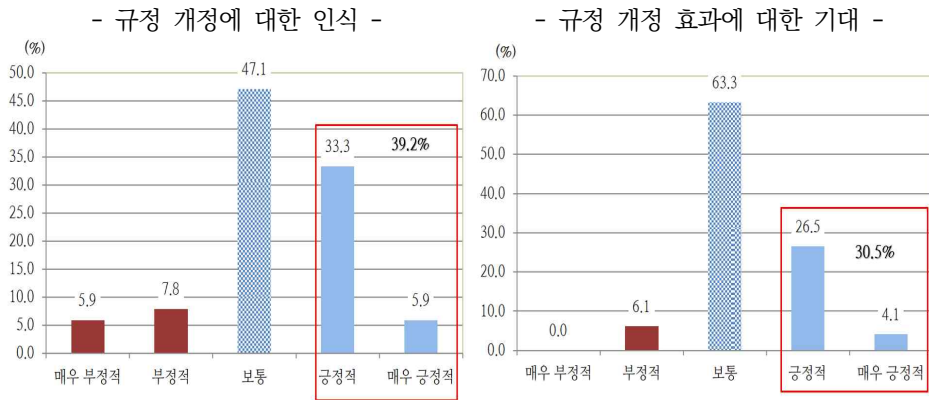
조합사업 이용 제한에 대해서도 전체의 47.9%가 부정적(부정적+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이용 제한 시기에 대해서는 가입 후 6개월이 3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그림 4-6] 참조)



[그림 4-6]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 조합사업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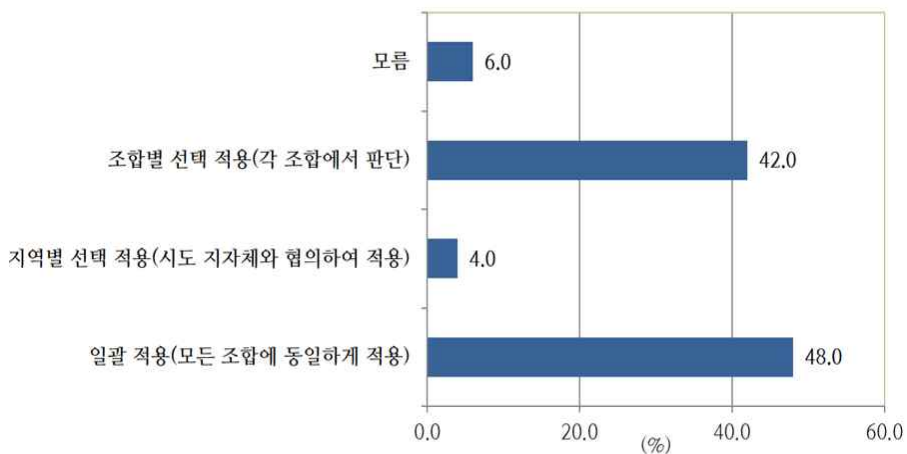
4) 조합원 자격제도 규정의 적용

회원조합은 조합원 자격제도 규정 개정에 대해 아직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된 규정의 적용 방식도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자격제도 규정 개정에 대해 절반 정도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운데, 부정적(부정적+ 매우 부정적) 응답은 13.7%였다. 규정 개정 효과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가운데, 부정적(부정적+매우 부정적) 응답은 6.1%에 불과했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규정 개정에 대한 인식 및 효과 기대 정도

[그림 4-8]은 규정 적용 방식에 대한 인식의 응답 결과를 도식한 것이다. 규정의 적용 방식은 일괄 적용 48.0%, 조합별 선택 적용 42.0%로 의견이 엇갈렸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 선택 적용에 대해서는 4.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4-8] 규정 적용 방식에 대한 인식

2. 어업인의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1) 응답 현황

어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는 총 280명이었다. <표 4-9>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지역별 분포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남(20.7%), 경남(16.4%), 강원(12.5%) 충남·경북(각각 10.7%)의 순으로 많았다.

〈표 4-9〉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응답수	비 중	구 분	응답수	비 중
합계	280	100.0	전남	58	20.7
강원	35	12.5	경북	30	10.7
경인	25	8.9	경남	46	16.4
충남	30	10.7	부산/울산	10	3.6
전북	15	5.4	제주도	31	11.1

응답자가 종사하는 어업별 분포는 다음의 <표 4-10>에 정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73.6%로 많았고, 양식어업 16.1%, 맨손어업 6.1% 등으로 나타났다. 연안어업에서는 연안자망어업이 전체의 29.6%, 연안복합어업이 25.4%를 차지했다. 이들 두 업종의 비중은 전체 대비 56.0%였다.

〈표 4-10〉 응답자의 종사어업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응 답 수	비 중	구 분		응 답 수	비 중
합 계		280	100.0	소 계		45	16.1
연안어업	소 계	206	73.6	양식어업	어 류	10	3.6
	자 망	83	29.6		패 류	13	4.6
	통 발	29	10.4		해 조 류	18	6.4
	복 합	71	25.4		기 타	1	0.4
	기 타	11	3.9		패류 + 해조류	2	0.7
	자망 + 통발 + 복합	2	0.7		패류 + 맨손	1	0.4
	자망 + 복합	8	2.9	맨 손 어 업		17	6.1
	자망 + 맨손	1	0.4	나 잠 어 업		5	1.8
	자망 + 복합 + 패류 + 맨손	1	0.4	기 타		7	2.5

주 : 자망+맨손, 자망+복합+패류+맨손, 패류+맨손은 임의로 연안어업과 양식어업에 포함

응답자의 어업경력은 〈표 4-11〉에 정리된 것과 같이 평균 22.5년, 조합원으로서의 경력은 18.4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어업 경력은 제주도가 평균 27.2년, 조합원으로서의 경력은 부산·울산이 22.4년으로 가장 많았다.

〈표 4-11〉 지역별 응답자의 경력 분포

(단위 : 년)

구 분	어 업	조합원	구 분	어 업	조합원
전국 평균	22.5	18.4	전남	21.8	16.8
강원	25.2	21.2	경북	24.7	21.0
경인	18.0	15.0	경남	19.3	16.6
충남	23.8	18.8	부산/울산	25.9	22.4
전북	19.6	16.5	제주도	27.2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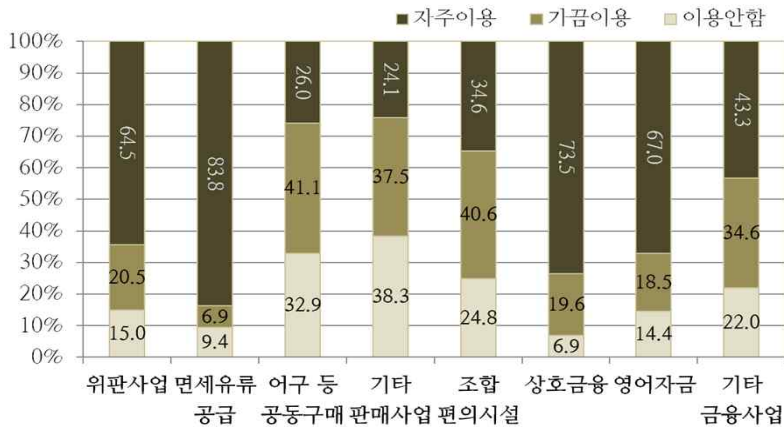
응답자의 어촌사회에서의 직책을 보면 절반이 일반 어업인으로 맡은 직책이 없었다.(〈표 4-12〉 참고) 그 외 어촌계장(10.0%), 어촌계 임원(8.9%), 조합 대의원(7.9%)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 4-12〉 응답자의 직책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응답수	비 중
합 계	280	100.0
어촌계장	28	10.0
어촌계 임원	25	8.9
어촌계 대의원	12	4.3
조합 대의원	22	7.9
조합 비상임이사	9	3.2
어촌계 임원 + 조합 대의원	1	0.4
어촌계 대의원 + 조합 대의원	1	0.4
기 타	42	15.0
없 음	14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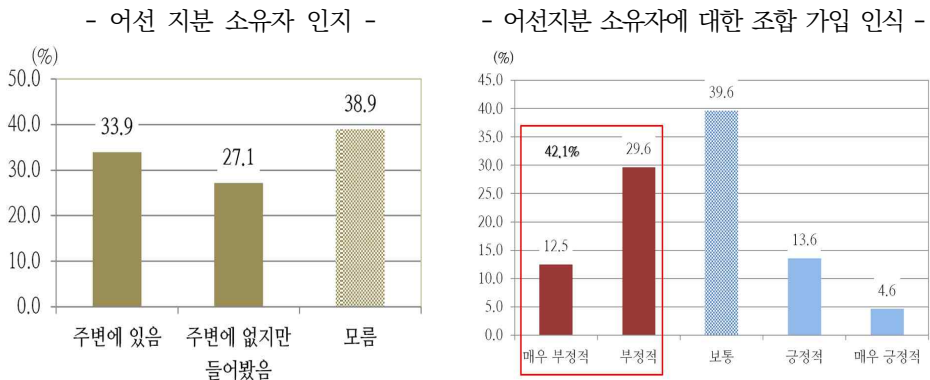
선거의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9%가 선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조합의 사업에 대한 이용은 [그림 4-9]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이용도가 높은 사업은 면세유류 공급사업이었다. ‘자주 이용’과 ‘가끔 이용’의 응답률을 합하여 사업 이용도를 살펴보면, 먼저 위판사업은 85.0%, 면세유류 공급사업은 90.7% 등으로 나탄나 이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관련 조합 사업의 경우도 상호금융이 93.1%, 영어자금 85.5%, 기타금융사업 77.9% 등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어구 등 공동구매사업과 기타 판매사업에 대한 사업 이용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67.1%, 61.6%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합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75.2%의 이용한다는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림 4-9] 응답자의 조합사업별 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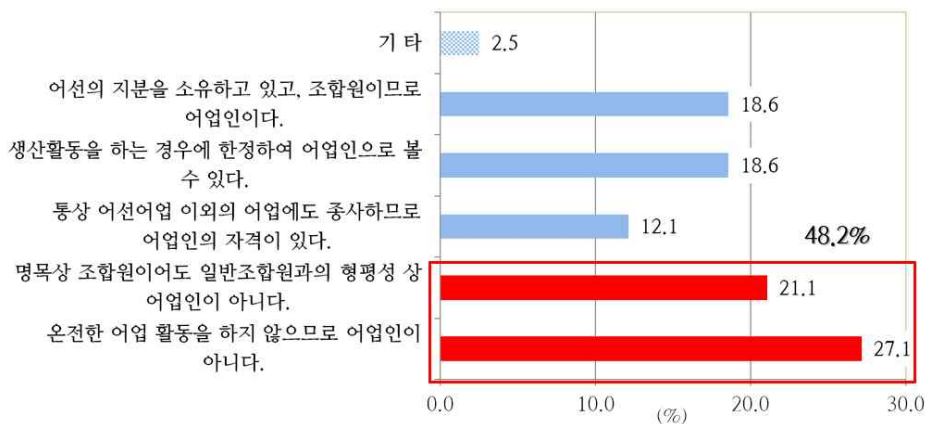
2)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인식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그림 4-10]에서 보면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해 61.0%가 주변에 있거나 주변에는 없지만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선 지분 소유자의 조합 가입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은 가운데, 부정적(42.1%, 부정적+매우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10] 어선 지분 소유자 인지 및 조합 가입에 대한 인식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인 자격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으로, 어업인이 아니라는 비중은 48.2%에 달했다. ‘조합원이므로 어업인이다’라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고,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18.6%), ‘어선어업 이외의 어업에 종사하므로’(12.1%) 등 조건부 어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참조)



[그림 4-11]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인 자격에 대한 인식

어업활동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어업활동 증명이 필요하다(필요함+매우 필요함)는 응답률은 61.1%로 필요 없음(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의 15.0%와 큰 차이를 보였다.(<4-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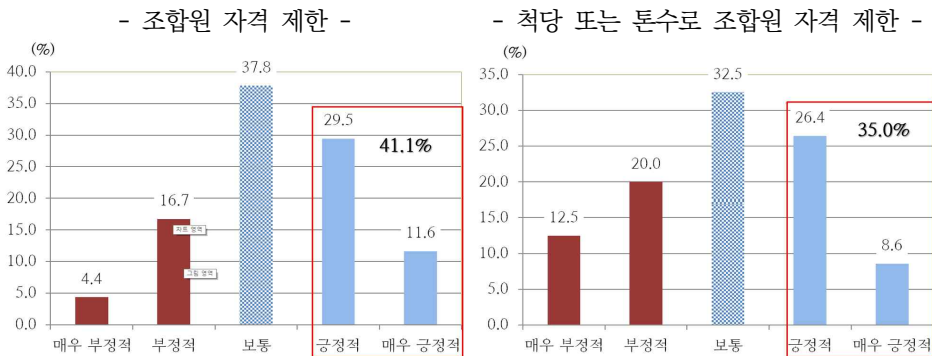
<표 4-13>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증명 필요성

(단위 : %)

구 분	합 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응답률	100.0	3.6	11.4	23.9	37.5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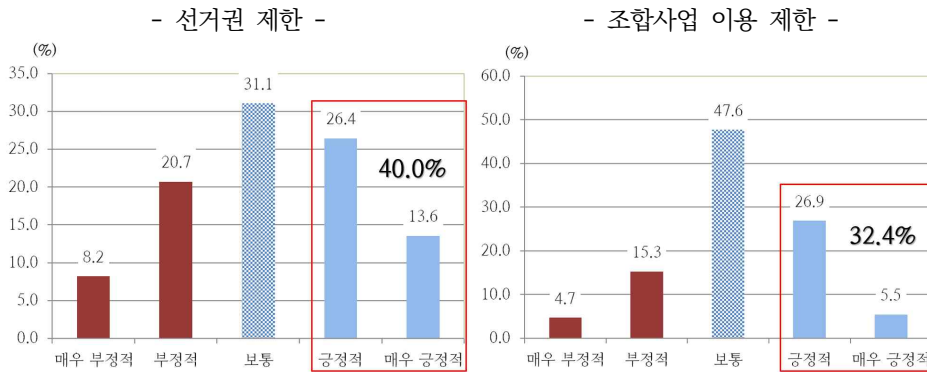
3)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

[그림 4-12]는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한 및 제한 방향에 대한 인식을 도식한 것으로, 어선 지분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41.1%가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적당 또는 톤수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 35.0%, 부정적(부정적+매우 부정적) 32.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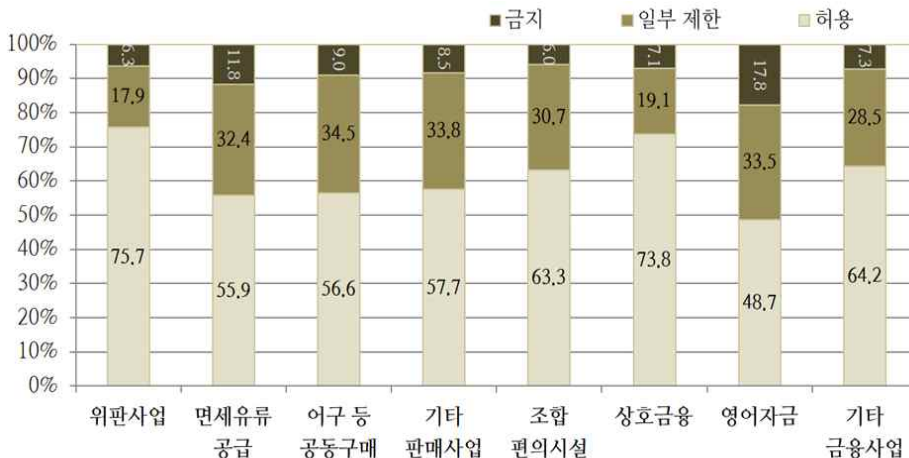
[그림 4-12]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한 및 제한 방향에 대한 인식

한편 어선 지분 소유자의 선거권 제한은 긍정적, 조합사업 이용 제한은 유보적 인식이었다.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0.0%, 부정적(부정적+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9%로 나타났다. 조합사업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47.6%가 판단을 유보(보통)한 가운데,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 32.4%, 부정적(부정적+매우 부정적) 20.0%로 나타났다.([그림 4-13] 참조)



[그림 4-13] 어선 지분 소유자의 선거권 및 조합사업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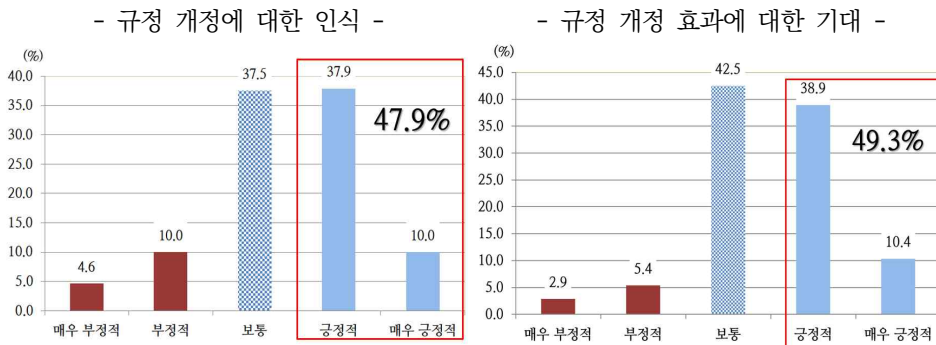
조합의 세부 사업에서도 대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위판사업(75.7%), 상호금융(73.8%)사업이 특히 높았다. 영어자금의 경우 금지(17.8%), 일부 제한(33.5%)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4-14] 참조)



[그림 4-14] 조합 사업별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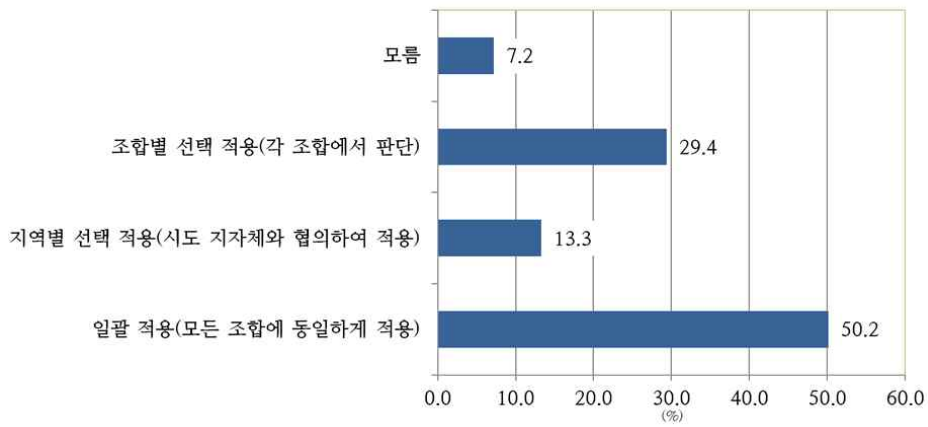
4) 제도 적용 및 효과에 대한 인식

어업인들은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안)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에 따른 조합원 자격 규정의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47.9%, 긍정적+매우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정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9.3%로 높았다.([그림 4-15] 참조)



[그림 4-15] 어업인들의 규정 개정에 대한 인식 및 효과 기대 정도

한편 어업인들은 조합과는 달리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안)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0.2%를 차지했다. 각 조합에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가 29.4%, 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률도 13.3%였다.([그림 4-16] 참조)



[그림 4-16] 규정 적용 방식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제3절 시사점

회원조합과 어업인 모두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보통’에 대한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높은 실정으로,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세워졌을 경우, 이를 위한 필요 논리 개발, 홍보 등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어업인과 회원조합 간 어선 지분소유자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인은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자격 강화, 제한 등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회원조합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즉,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원 확보’를 통해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분어선·지분권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어업인 상호 간 ‘형평성’, ‘공정’ 등에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분어선·지분권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어업활동 증명의 필요성도 크게 보고 있다.

지분권자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분권자를 어업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회원조합과 어업인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원조합의 경우 ‘지분권자가 어업자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28.0%, 나머지는 어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조합원이므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한정’, ‘어선어업 외 여타 어업에도 종사하므로’ 어업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업인의 경우 ‘지분권자가 어업자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48.2%로 회원조합에 비해 지분권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회원조합과 어업인 간 인식 차이는 비단 지분어선·지분권자에 대

한 인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안과 같은 제도 적용에서도 둘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조합의 경우 제도를 전국 회원조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 회원조합에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개별 조합에 따라 제도의 적용에서 차이를 보이기 보다는 동일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경영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반면 어업인은 ‘평등과 공정’ 등을 강조한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대하는 효과도 회원조합과 어업인 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회원조합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어업인은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규정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어선어업의 환경을 고려함은 물론 어업인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회원조합뿐만 아니라 어업인을 대상으로도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 자격의 경우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인식차가 매우 큼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할 경우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제 5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제 2 절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본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바를 언급한다. 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시사점 등을 요약하고자 한다. 이에는 어선의 ‘지분 쪼개기’와 관련한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의 필요 여부에 대해 판단도 포함된다.

1. 연구 중점 사항

1) 우리나라의 어선 지분 구조 파악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 또는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분을 통해 어선을 소유한 자가 수협 조합원이 된 경우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들로 인한 민원 등의 발생, 여타의 부작용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만연하여 일반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도 농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어선 지분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상 발생하고 있는 지분을 통해 어선을 소유한 경우를 확인하고자 했다.

2) 기존 사례 검토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례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사례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제도에 벤치마킹할 부분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산림조합의 사례는 명백히 참고할 만하다. 특히 지분으로 재산을 나누어 소유함과 이를 선거 등에 악용함은 수산부문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산림조합은 일명 ‘산 쪼개기’ 이후 이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산림조합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3) 정책수요자의 태도 확인

제도의 개선에서 정책수요자의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변화된 제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정책수요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태도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 등에 긍정적인 필요가 있다. 제도의 수용도가 높아지면 관련 정책의 실행력도 그만큼 개선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 만족도도 상승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요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책수요자는 어업인, 회원조합으로 구분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시사점 종합

1) 수협의 조합원 및 선거 관리 현황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이후 수협은 60년 동안 존속되고 있다. 지도, 경제, 금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수협의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 및 선거 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합원 제도, 선거관리 규정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어업인 및 조합원의 자격에서 경영 규모 제한이 없다.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서는 개별 업종에 따라 최소한의 경영 규모에 대한 기준을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서는 어업인 및 조합원에 대한 최소 경영 규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향후 정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규정과 같은 수산업 부문에서의 최소 경영 규모를 산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업인과 조합원의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통상 어업인의 자격은 60일 이상 어업활동 또는 120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은 어업인의 자격 중 120만원 이상의 매출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직접적인 어업활동만을 조합원 자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농협과 산림조합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 비정기적인 조합원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소위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관리는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합원의 어업활동 확인 등 여타의 관리 활동 역시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향후 이 점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 어업인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명확한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조합의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거 등이 치러지고 있으며, 선거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의 기준이 된다.

2) 어선의 지분구조 분석 결과

어선의 지분구조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어느 정도의 어선에 대한 지분 소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지분구조 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어선의 지분소유자는 소수에 불가하다. 어선 1척 당 소유권자의 수는 1.07명이었다. 게다가 조합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획물운반어선 고려 시 어선 1척 당 소유권자 수는 1.06명으로 더 줄어든다.

둘째, 1척 당 지분소유자의 수도 5인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2~3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다. 이는 어선구매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 어업자 간 공동사업, 어선은 고가의 재산이므로 증여나 상속을 위한 가족 간 어선의 공동 소유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셋째, 지분어선의 상대적 동해안 지역 집중 분포되어 있다. 특히 경북에서 지분어선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원, 제주 등에서도 지분어선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타 지역에 비해 어업경영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현상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학계 차원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분어선과 관련한 민원의 발생이 미미하다.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민원의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민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선 지분 소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선의 지분구조 분석을 통해 어선의 지분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어선의 지분소유도 납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어선의 지분을 소유하여 조합원이 되어 선거 등에 영향을 주는 소위 “지분쪼개기”가 수산부문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어선의 지분 소유로 회원조합의 선거에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조합원 자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은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조합원 자격 제한 기준(톤급별 1척당 조합원 수) 설정의 어려움, 향후 지분 소유로 인한 자격 제한이 양식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3) 어선 지분율 특징

어선의 지분을 소유한 비율은 각 어선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유형화해서 보면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지분소유자가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둘째, 일부 지분 소유자의 비율이 여타 소유자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셋째, 1명의 지분 소유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율을 소유하는 것이다.

한편 마을어장 관리, 어획물 운반업 등 공동의 사업 목적에 따른 어선의 공동소유 형태가 눈에 띈다. 이 경우 동일한 지분을 가지는 형태가 많은데, 어촌계와 같은 공동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소수 또는 개인 사업의 경우는 1명의 지분 소유 비율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4) 회원조합과 어업인 간 지분소유자에 대한 인식

회원조합과 어업인 모두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변에서 어선 지분 소유자가 많지 않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 간 어선 지분소유자에 대한 인식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인은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자격 강화, 제한 등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회원조합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즉,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원 확보’를 통해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분어선·지분권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어업인 상호 간 ‘형평성’, ‘공정’ 등에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인식 차이는 향후 관련 제도, 이 외 여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한 설득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어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 정책수요자의 태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의 확인, 업무 개선,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같은 점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정책 제언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수협이 지도사업 개선, 둘째, 지자체의 역할 강화이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 어업인, 정책입안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제도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수협의 지도사업 개선

1) 조합원의 어업활동 증명 의무화

수협의 조합원은 가입 시 어업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함은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상 지속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원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원의 어업활동을 증명하는 별도의 규정 또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이 그렇지 않은 조합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 효과적인 조합원의 어업활동 증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업활동의 확인을 통해 조합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어업활동 확인 결과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회원조합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일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회원조합에 대한 업무지원의 하나로 주기적인 조합원에 대한 어업활동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이다.¹⁶⁾ 이것은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해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 업무의 시기 등을 알리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2) 각종 선거 시 선거인명부 작성의 투명화

조합장, 대의원, 상임이사 등 조합에서는 다양한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등 선거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지키며, 원활히 선거업무를 추진한다.

산림조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분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를 선거에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인 명부 작성 시 산림조합과 같은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3)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실제 조합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지구별수협 정관(예) 제17조).

16)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게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주기적인 조합원에 대한 어업활동 확인을 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자격 상실이 어느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입장에서는 연중 무자격 조합원 정비사업을 실행해 왔다. 선거에서의 시비 발생, 조합원 간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이 사업의 근거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합원 자격 변경신고의 의무와 조합원 당연 탈퇴 조항이다. 그렇지만 연중 실시되는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한 피로감이 조합원과 조합 측에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임종선, 2021)

따라서 그간 연중 실시된 무자격조합원 정비사업을 특정 시기로 한정한다면 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가칭)조합원 자격 일제 갱신 기간’과 ‘(가칭)조합원 자격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에게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이 부당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조합과 조합원 간 피로감 해소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조합원 정비사업의 시기를 특정하고, 대상이 되는 조합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럴 경우 무자격조합원 정비사업의 절차는 ① 무자격조합원 분류, ② 이사회 심사, ③ 해당 조합원 통보, ④ 소명, ⑤ 이사회 의결, ⑥ 무자격조합원 정비의 6단계로 이루어진다.

4)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 대상 감사 기능 강화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특정 사업 또는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원과 감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조합의 원활한 업무처리는 물론 정상적인 운영,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한다.

어선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얻고 조합원이 된 경우도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는 조합원 탈퇴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무자격 조합원 정비 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입장에서 많은 행정적인 수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곤란한 사정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의 지원을 요청하여 사건을 원만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기존의 감사업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를 특정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수협중앙회의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해 회원조합으로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자체의 역할 강화

어선의 등록과 관리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관할한다. 어선의 지분 구조를 포함한 어선 정보 역시 정부에서 수집 관리한다. 하지만 어선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든지 관련 정보의 분석을 통해 사전 문제 파악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선의 지분을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은 산림조합의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선 정보의 공유와 사전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분어선이 소규모 어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안어업의 허가 등을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어선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어선

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수협으로 관련 정보를 알림으로써 부당한 조합원 자격 취득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구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시기는 조합장 등의 선거 시기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즉, 매년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대비하여 4년 주기로 실시하며, 필요 시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으로 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주기적인 어선 소유구조를 파악하도록 조장할 필요도 있다.

3. 조합원의 최소 경영 규모 설정 검토 필요

1) 조합원 자격 취득에 대한 경영 규모 기준 설정의 필요성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업인들은 형평성에 대해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어업인들이 어선의 지분소유자에 대해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현행 어선의 지분 소유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어업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즉, 무자격 조합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선의 지분소유자는 산림조합의 예에서 보듯 “지분포개기”를 통한 선거 부작용 초래라는 면에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 및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분 소유에 의한 조합원 자격 취득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가진다. 첫째, 조합원 간 갈등 조장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분 소유 조합원의 지속적인 어업활동 여부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⁷⁾

둘째, 지분 소유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가진다. 산림조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지분 소유가 선거에 악용된 것이었다. 비록 현실적으로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의 수가 과소하고, 적당 지분권자의 수도 2~3명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는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셋째, 제도적 완비이다. 농업과 임업 부문의 경우 최소 경영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보유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수산 부문은 어업인의 경영 규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즉, 농업과 임업 부문에 비해 제도적으로 완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조합원 간 갈등 요인 제거,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 배제, 제도적 완비성 등의 이유로 수협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조합원 자격 취득에 대한 경영 규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선어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어업,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의 경영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영 규모 설정의 고려사항

조합원 자격의 경영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회원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고, 업종, 경영 규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적 기준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규모 검토를 위한 원칙이 필요하며 다음의 세 가지를 전언한다.

첫째,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 규모가 정상적인 어

17) 가령 지분소유자가 조합의 간부가 되었을 경우, 실제 어업활동 여부에 따라 조합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업 및 경영활동이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과 임업 부문에서와 같이 단순 면적의 크기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농업과 임업의 경우 기준 면적 하에서 농경을 할 경우 발생하는 산출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의 최소 기준은 1척으로, 토지와는 달리 분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영활동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어업경영의 책임성을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 지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지분율 40% 이상으로’ 등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¹⁸⁾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농업과 임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시설의 수로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지분율의 정도로 조합원 자격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

둘째, 어업인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업인들은 형평성에 매우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다. 따라서 경영 규모 기준도 업종 안에서뿐만 아니라 업종 간에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선어업의 경우 1톤 어선에서 50% 지분을 가진 자와 9톤 어선에서 50% 지분을 가진 자, 20톤 어선에서 50% 지분을 가진 자 간 형평성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업종 간에는 가령 맨손어업자 1명과 20톤 어선에서 50% 지분을 가진 자 간 형평성 등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3면이 바다이면서 각 해역의 자연환경이 각기 달라 다양한 어종이 생산된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업종, 양식어업의 종류가 매우 많으며, 맨손어업도 해역마다 다른 생산행태를 보인다. 이에 설정하고자 하는 경영 규모 기준은 각 지역, 업종 및 품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설정될 경우 제도 적용의 용이

18) 어선어업에서 어업활동은 선박 단위로 행해지므로 어선의 규모를 톤급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즉, 지분율을 톤급별로 나눠서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 행정력 소요, 어업인들의 혼란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 이에 각 지역 및 어종·품종의 다양성보다는 보편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 강석규·정형찬 (1997), "어선어업 경영체의 재무구조 특성", 수산경영론집 제28권 제2호, pp. 1-18.
- 고석환 (1983), "어선에 관한 세무행정(VIII)-수인이 공동으로 어선을 구입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한국어선협회, 어선 제16호, pp. 58-62.
- 김경호 (1995), "한국수협운영의 문제점과 대책방향", 수산경영론집 제26권 제2호, pp. 27-52.
- 김승 (1987), "수협 지도사업의 역할과 금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서남 해천해해조양식어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구별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제18권 제2호, pp. 69-93.
- 남수현 (2002), "수산업협동조합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3권 제2호, pp. 99-125.
- 류덕현·양근원 (2010), "일선수협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평가에 관한 실증분석", 수산경영론집 제41권 제1호, pp. 1-22.
- 박상수 (2004),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재산권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19호, pp. 171-187.

- 박이봉·최정윤 (1991), "수산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22권 제2호, pp. 101-148.
- 박준모 (2013), "수협 단위조합 소매사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44권 제1호, pp. 39-57.
- 박준모 (2015), "수협 회원조합의 매출액 규모가 수산물 가공사업에 미치는 영향", 수산경영론집 제46권 제3호, pp. 1-14.
- 박진규 (2018), 「수협 조합원 가입 확대 방향」,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박태수 (1970), "수산업협동조합의 영리성에 관한 일고찰-경영주체관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제1권 제2호, pp. 35-47.
- 안세원 (1981), "수산업협동조합의 마케팅에 관한 연구 - 마케팅 경로를 중심으로 -", 수산경영론집 제12권 제2호, pp. 61-71.
- 안세원 (1986), "수협 마케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17권 제1호, pp. 77-106.
- 오환중 (1985),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사업에 관한 고찰", 수산경영론집 제16권 제1호, pp. 31-54.
- 옥진영 (1974), "어협출자금 증자운동의 효과 및 영향", 수산경영론집 제5권 제1호, pp. 3-7.
- 이동호 (2015), "일제강점기의 통영인근지역 어업권 분쟁과 어업·수산업 관련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역사적 고찰", 수산경영론집 제46권 제1호, pp. 41-62.

이선신 (2012),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선거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권 제1호, pp. 29-60.

이선신 (2020), "협동조합법상 '공직선거관여 금지' 또는 '정치관여 금지' 규정에 대한 검토",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8권 제3호, pp. 1-24.

임종선 (2021), 「수협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장수호 (1972), "어협운동과 어시장", 수산경영론집 제2권 제1호, pp. 37-58.

전형수 (200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명예직화에서 본 지배구조의 문제점", 수산경영론집 제40권 제1호, pp. 97-112.

전형수 (2010),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서 본 임원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8권 제1호, pp. 51-69.

정광중·강만익 (2003), "추자도 어선어업의 실태와 특성",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2집, pp. 41-84.

정만화 (2004), "수협중앙회 이사회제도에 대한 수용자 태도 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5권 제2호, pp. 1-29.

정만화·김병호 (2003), "협동조합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4권 제1호, pp. 185-211.

정만화·최정운 (2005), "단위수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이사회제도에 대한 수용자태도 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6권 제3호, pp. 37-63.

- 정상진 (1995), "협동조합의 효율성 : 수협중앙회의 사례", 수산경영론집 제24권 제2호, pp. 133-146.
- 정재헌 (2013), "수도권수산업협동조합 영업점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영 시스템학회지 제36권 제1호, pp. 17-23.
- 정형찬 (1996), "수협의 이용고배당과 회전출자제도", 수산경영론집 제27권 제1호, pp. 91-107.
- 최정운 (1973), "어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I)-경남관내 지구별 어업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제4권 제1호, pp. 58-89.
- 최정운 (1974), "어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II)-사업. 수지구조를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제5권 제1호, pp. 43-93.
- 최정운 (1975), "미국의 농·수협 발달과정과 조직운영 특징에 관하여", 수산경영론집 제6권 제2호, pp. 1-33.
- 최정운 (1990), "한국 근해어업의 경영구조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21권 제2호, pp. 1-53.
- 최정운 (1998),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관리기능에 대한 비교 연구 -어촌계의 어장관리활동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제29권 제2호, pp. 21-46.
- 최정운·박이봉 (1987), "수협재무상태의 주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18권 제1호, pp. 1-34.

[언론자료]

농업경제신문(2020.10.21), 「'마이너스의 손' 산림조합...표 매수·적자 등 국감 '못매」

매일경제TV(2020.10.22), 「산림 조합장 뭐길래...동네 작은산 826명이 쪼개 가져」

KBS(2019.2.26), 「수상한 산림 쪼개기 거래...조합원 늘리기 꼼수?」

최인호(2020.10.15.), 「조합장 선거 앞두고 반복되는 산 쪼개기, 1,400평 부지에 주인만 826명」, 2020년 국감 보도자료.

부록 1.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부문 연구 동향

수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는 수산업협동조합이다. 실제 어업인의 다수가 수협의 조합원이며, 수협의 기본 사업 외 정부의 정책 사업도 수협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기서는 수협을 주된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수산업협동조합을 직접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27편이었다. 선행연구를 찾기 위해 구글 학술검색을 이용했으며, 유사 연구는 제외했다. 다음의 <부록 표 1~3>는 선행연구를 연구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970년대 들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연구 초창기로 협동조합 운동, 조합 운영, 조합의 발달 과정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부록 표 1〉 수협 관련 연구 초창기(1970년대)의 연구목록

저 자	연도	제 목	학술지
박태수	1970	수산업협동조합의 영리성에 관한 일고찰 - 경영주체관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장수호	1972	어협운동과 어시장	
최정운	1973	어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I) - 경남 관내 지구별 어협을 중심으로	
최정운	1974	어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II) - 사업, 수지 구조를 중심으로	
옥진영	1974	어협출자금 증자운동의 효과 및 영향	
최정운	1975	미국의 농·수협 발달과정과 조직운영 특징에 관하여	

1980년대 들어서는 수협의 사업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에 마케팅, 상

호금융사업, 지도사업 등 수협의 사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수협의 재무상태,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다. 1990년대에는 수협의 운영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내부통제제도, 출자제도, 어업권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부록 표 2〉 1980~90년대 수협 관련 연구 목록

저 자	연도	제 목	학술지
안세원	1981	수산업협동조합의 마아케팅에 관한 연구 - 마아케팅 경로를 중심으로 -	수산 경영 론집
오환중	1985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사업에 관한 고찰	
안세원	1986	수협 마아케팅에 관한 연구	
김승	1987	수협 지도사업의 역할과 금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남해천해해조양식어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구별 수협을 중심으로	
최정운·박이봉	1987	수협재무상태의 주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박이봉·최정운	1991	수산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김경호	1995	한국수협운영의 문제점과 대책방향	
정상진	1995	협동조합의 효율성 : 수협중앙회의 사례	
정형찬	1996	수협의 이용고배당과 회전출자제도	
최정운	1998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관리기능에 대한 비교 연구 -어촌계의 어장관리활동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2000년대에는 수협 조직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수협의 소유지배구조, 이사회제도 등이 주된 연구 주제였다. 이와 함께 일선 수협의 경영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기존과는 다른 주제가 등장했다. 수협 영업점의 효율성, 수협의 소매사업 및 수산물 가공사업, 일제강점기 내 수산 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부록 표 3〉 2000~2010년대 수협 관련 연구 목록

저 자	연도	제 목	학술지
남수현	2002	수산업협동조합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정만화·김병호	2003	협동조합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정만화	2004	수협중앙회 이사회제도에 대한 수용자 태도 분석	
정만화·최정운	2005	단위수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이사회제도에 대한 수용자태도 분석	
전형수	200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명예직화에서 본 지배구조의 문제점	
전형수	2010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서 본 임원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 협동조합연구
류덕현·양근원	2010	일선수협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평가에 관한 실증분석	수산경영론집
정재현	2013	수도권수산업협동조합 영업점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영 시스템학회지
박준모	2013	수협 단위조합 소매사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이동호	2015	일제강점기의 통영인근지역 어업권 분쟁과 어업·수산업관련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준모	2015	수협 회원조합의 매출액 규모가 수산물 가공사업에 미치는 영향	

부록 2.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 조사표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

어선의 지분 소유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자격 취득의 정당성,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건전한 어업경영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본 조사는 회원조합의 조합원 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어선의 지분 소유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으로 인한 부작용을 확인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관리 및 어선 지분 소유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연구에 활용함이 조사 목적이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조합의 의견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회원지원부 전다윗 팀장, 최영은 과장(02-2240-2233)

I

조합 일반 사항

1. 조합이 위치한 지역 및 조합명은 무엇입니까?

☞ 지역 : _____ 시·군, ☞ 조합명 : _____ 수협

2. 귀 조합의 위판액 및 자산규모는 얼마입니까?

☞ 위판액 : _____억 원, ☞ 자산액 : _____억 원

3. 귀 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업종별로 얼마나 됩니까?

☞ 조합원 : 총 _____명(2022년 1월 1일 기준)

☞ 업종별 조합원 현황 : 종사 비율로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합계	근해어업	연안어업	양식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비중	100%	%	%	%	%	%	%

☞ 연안어업 종사 조합원 현황 :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업종별 비율

구분	연안어업					
	합계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개량안강망	기타
비중	100%	%	%	%	%	%

4. 귀 조합의 연안어선 척수 및 톤수별 비중은 어떻습니까?

구분	연안어선 수					
	합계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개량안강망	기타
척수	척	척	척	척	척	척

구분	톤수 별 비중					
	합계	1톤 이하	1~3톤 이하	3~5톤 이하	5~7톤 이하	7~10톤 이하
비중	100%	%	%	%	%	%

5. 귀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조합 사업’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각각의 사업별로 해당 칸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이용 빈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판매 사업	위판사업					
	면세유류 공급					
	어구 등 공동구매					
	기타 판매사업					
복지 사업	조합 편의시설					
	기타 복지사업					
금융 서비스	상호금융					
	영어자금					
	기타 금융사업					

II

조합원 관리 실태

1. 귀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포함한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 귀 조합에서는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한 내용	제한 근거 (법, 정관, 규정, 이사회 결의 등)

3. 귀 조합에서는 조합원 가입과 관련하여 ‘어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절차 또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행정절차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확인 내용	관련 서류 및 규정

4. 귀 조합은 조합원의 지속적인 어업활동 여부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① 확인하지 않음 ② 확인함

☞ 확인할 경우 그 주기와 방법 및 절차는 무엇입니까?

확인 주기	확인 방법	확인 절차

III

어선 지분 소유자 현황

☞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 : 1척의 어선을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

1. 귀 조합에는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조합원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경우가 있는 조합 → 총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총조합원의 _____% 차지)

2.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조합원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미미함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

2-1. 부작용(민원)이 있는 경우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입니까?

민원 내용	① 전혀 없음	② 미미함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
조합가입의 정당성					
선거권(투표권)					
조합사업 이용					
공동구매					
면세유통					
영어자금					
상호금융					
기타					

3.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조합원을 통상 ‘어업인’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온전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어업인이 아니다.
 ② 명목상 조합원이라고 해도 일반조합원과의 형평성 상 어업인이 아니다.
 ③ 통상 어선어업 이외의 어업에도 종사하므로 어업인의 자격이 있다.
 ④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어업인으로 볼 수 있다.
 ⑤ 어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조합원이므로 어업인이다.
 ⑥ 기 타()

- 5-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1-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2. 귀 조합은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별로 ○ 표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조합 가입	제 한					
	자격 강화					
선거권	제 한					
	제한 기간 설정					
사업 이용	제 한					
	제한 기간 설정					
	일부 사업 제한					

3. 귀 조합은 어선 1척당 또는 톤수별로 조합원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3-1. 귀 조합은 어선 1척당 최대 조합원 수는 몇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명)

3-2. 귀 조합은 어선 규모 ‘몇 톤부터’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톤)

4. 귀 조합은 신규 조합원에 대해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① 제한하고 있음(기간 : 개월) ② 제한 안함

5. 귀 조합은 어선 지분 소유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를 여타 신규 조합원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 '선거권 행사 대기 기간 : 조합원 가입 후 선거권이 발생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5-1. 귀 조합은 어선 지분 소유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 대기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5-2. 귀 조합은 어선 지분 소유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 대기 기간을 확대할 경우 다음 중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어떤 것입니까?

① 6개월 ② 12개월 ③ 18개월 ④ 24개월 ⑤ 기타()

6. 귀 조합이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에 대한 개선안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6-1. 개선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

7. 귀 조합은 신규 조합원에 대해 일정 기간 조합 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 ① 전면 제한하고 있음(기간 : 개월)
 ② 일부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사업 : , 기간 : 개월)
 ③ 제한 안함

8. 귀 조합은 어선 지분 소유 신규 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을 여타 신규 조합원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9. 귀 조합은 어선 지분 소유 신규 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 제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6개월 ② 12개월 ③ 18개월 ④ 24개월 ⑤ 기타()

10. 귀 조합은 다음의 조합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어선 지분 소유자의 사업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용 : 가입 후 바로 이용 가능, 제한 : 가입 후 제한부(일정 요건) 이용**

구 분		① 허용	② 제한	③ 금지
판매 사업	위판사업			
	면세유류 공급			
	어구 등 공동구매			
	기타 판매사업			
구 분		① 허용	② 제한	③ 금지
복지 사업	조합 편의시설			
	상호금융			
금융 서비스	영어자금			
	기타 금융사업			

V

조합원 자격 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

1. 귀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2. 귀 조합은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괄 적용(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
 ② 지역별 선택 적용(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적용)
 ③ 조합별로 선택적으로 적용(각 조합에서 판단)
 ④ 모 립
- 2-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3. 귀 조합은 조합원 자격 규정 개정의 효과가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어선의 지분 소유 및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어선의 지분 소유 및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 조사

어선의 지분 소유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자격 취득의 정당성,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건전한 어업경영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본 설문은 어선의 지분 소유와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며, 설문 결과는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회원지원부 전다윗 팀장, 최영은 과장(02-2240-2233)

☞ 다음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일반 사항

1. 귀하의 소속 조합 및 종사 업종은 무엇입니까?

☞ 소속 조합 : ()수협

☞ 종사 업종 : 해당하는 칸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연안어업				양식어업				펜손 어업	나잠 어업	기타
	자망	통발	복합	기타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 귀하의 어업 및 조합원 경력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어업 경력	조합원 경력
년	년

3. 다음 중 귀하가 맡고 계신 직책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어촌계장 ② 어촌계 임원 ③ 어촌계 대의원 ④ 조합 대의원
⑤ 조합 비상임이사 ⑥ 기 타 ⑦ 없 음

4. 귀하는 조합 또는 어촌계에서 선거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경험함 ② 경험하지 않음

5.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조합이 행하는 사업’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각각의 사업별로 해당 칸에 ○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① 이용 안함	② 가끔 이용	③ 자주 이용
판매사업	위판사업			
	면세유류 공급			
	어구 등 공동구매			
	기타 판매사업			
복지사업	조합 편의시설			
금융 서비스	상호금융			
	영어자금			
	기타 금융사업			

II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인식

☞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 : 1척의 어선에 대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

1. 귀하의 주변에 어선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사례를 아십니까?
① 주변에 있음 ② 주변에는 없지만 들어봤음 ③ 모름
2.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하여 조합원이 된 경우 ‘어업인’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온전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어업인이 아니다.
② 명목상 조합원이라고 해도 일반조합원과의 형평성 상 어업인이 아니다.
③ 통상 어선어업 이외의 어업에도 종사하므로 어업인의 자격이 있다.
④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어업인으로 볼 수 있다.
⑤ 어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조합원이므로 어업인이다.
⑥ 기타
3. 평소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사람의 어업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불가능하다 ②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하다
③ 모름
4. 귀하께서는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4-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5. ‘어업인 또는 조합원’ 이기 위해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별도의 어업 활동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III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2. 귀하는 지분으로 어선을 소유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2-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3. 귀하는 어선 1척당 또는 톤수별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3-1. 귀하는 어선 1척당 최대 조합원 수는 몇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명)

3-2. 귀하는 어선 규모 ‘몇 톤부터’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톤)

☞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4. 귀하는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 ‘선거권 행사 대기 기간 : 조합원 가입 후 선거권이 발생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4-1. 귀하는 선거권 행사 대기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4-2. 귀하는 선거권 행사 대기 기간을 확대할 경우 다음 중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어떤 것입니까?

① 6개월 ② 12개월 ③ 18개월 ④ 24개월 ⑤ 24개월 초과

5. 귀하는 어선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조합의 사업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6. 귀하는 다음의 조합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어선 지분 소유자의 사업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허용	② 제한	③ 금지
판매 사업	위판사업			
	면세유류 공급			
	어구 등 공동구매			
	기타 판매사업			
구 분		① 허용	② 제한	③ 금지
복지 사업	조합 편의시설			
금융 서비스	상호금융			
	영어자금			
	기타 금융사업			

IV

조합원 자격 규정 적용에 대한 인식

- 귀하는 ‘조합원의 자격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 귀하는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괄 적용(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
② 지역별 선택 적용(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적용)
③ 조합별로 선택적으로 적용(각 조합에서 판단)
④ 모 림
- 귀하는 조합원 자격 규정 개정의 효과가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설문 끝.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조합원 자격 제도개선 연구

- 어선의 지분구조를 중심으로 -

발	행	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발	행	인	회 장 임 준 택
편	집	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우 동 식
수 산 경 제 연 구 원	전	화	(02) 2240-0427
연 락 처	팩 스	(02) 2240-0426	
인 쇄 처	사단법인 우리들행복나눔 인쇄사업단	(031) 442-0470	
발	행	일	2022. 05

〈비매품〉